

naboo Industrial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19년 12월호 통권 제27호

CONTENTS

- I. 가계소득·부동산·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 II. 지역 R&D투자의 효율성 분석
- III.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산업·무역·산업여신·에너지 동향 1월, 4월, 7월, 10월
고용·인구·연금(보험) 동향 2월, 5월, 8월, 11월
가계소득·부동산·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3월, 6월, 9월, 12월

nabO Industrial Trends & Issues
산업동향&이슈

2019년 12월호 통권 제27호

CONTENTS

- I. 가계소득·부동산·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05
 - II. 지역 R&D투자의 효율성 분석 25
 - III.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 39
-

가계소득

(단위: 전년동기대비, %)

1.3

3.8

2.7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분기

주택매매가격

(단위: 전월대비, %)

0.01

0.12

0.19



2019년 9월

10월

11월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단위: bp)

31

34

33

28



2019년 1분기

2019년 2분기

2019년 3월

2019년 10~11월

가계소득·부동산·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788-4677), 인구전략분석과(788-4752), 경제분석총괄과(788-4671)

2019년 3분기의 가구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나타내는 (명목)처분가능소득은 1.5% 증가하였고, 소득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배율은 5.37배로 전년동기 대비 0.15배p 하락

- 경상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8.6% 증가함에 따라 3.3% 증가하였고, 처분가능소득도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여력이 전년동기대비 확대
-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명목소득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0.4% 증가하였고,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7%, 0.3% 증가
- (분배지표) 2019년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은 5.37배로 전년동기(5.52배)대비 하락하여 소득불평등 완화

2019년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은 0.19%,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은 0.22%로 증가율이 소폭 상승

- 2019년 1~11월 기간 동안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상승하였으나 이외 지역은 하락세
 - 같은 기간 대전,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보임

2019년 3분기 전국의 상업용부동산의 임대가격은 하락세

- 유형별 임대가격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오피스(업무시설) -0.18%, 중대형 상가 -0.18%, 소규모 상가 -0.17%, 집합상가 -0.19%로 모두 하락세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중간 무역합의 기대,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위험지표는 하락세, 금리 및 주가는 상승세, 주요 통화가치는 차별화 양상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하락세
 - 한국의 CDS프리미엄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
- 글로벌 금리 및 주식시장은 상승세, 주요국 대달러 환율은 엔화를 제외하고 전반적 하락세 시현
 - 금속 가격과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 강세

가계소득 동향

가계소득

2019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명목소득)은 경상소득의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만 6,856원으로 전년동기(474만 7,913원)대비 12만 8,943원 증가
- 경상소득*은 486만 1,134원으로 전년동기(470만 4,939원)대비 3.3%(15만 6,195원) 증가
 - 소득유형별로는 비중(68.9%)이 가장 큰 근로소득이 336만 953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만 4,897원(4.8%) 증가하고, 이전소득(8.6%)도 증가하였으나, 사업소득(-4.9%)과 재산소득(-2.5%)은 감소

※ 경상소득: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자의 사업소득, 이자·배당금 등 재산소득, 정부·타가구·비영리 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소득 등

- 비경상소득*은 1만 5,722원으로 전년동기의 4만 2,974원 대비 63.4%(-2만 7,252원) 감소

※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처분가능소득*은 373만 8,651원으로 전년동기(368만 2,894원)대비 1.5% (5만 5,757원) 증가

※ 처분가능소득: 개인소득에서 세금, 이자,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성 지출을 차감한 것

2019년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7.7
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7% 증가

[표 1] 가계소득(명목소득) 동향

(단위: 원, 전년동기대비 %, %)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3분기	증감율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감율	구성비
소득	4,537,192	4,747,913	(4.2)	4,606,125	4,826,323	4,704,176	4,876,856	(2.7)	(100.0)
경상소득	4,451,898	4,704,939	(6.3)	4,568,356	4,802,876	4,683,345	4,861,134	(3.3)	(99.7)
근로소득	3,066,965	3,206,056	(5.3)	3,114,724	3,220,792	3,169,168	3,360,953	(4.8)	(68.9)
사업소득	915,875	925,613	(3.8)	911,305	892,180	908,517	879,825	(-4.9)	(18.0)
재산소득	18,820	20,563	(34.4)	19,353	16,511	24,909	20,051	(-2.5)	(0.4)
이전소득	450,239	552,707	(16.6)	522,974	673,393	580,751	600,305	(8.6)	(12.3)
비경상소득	85,294	42,974	(-68.6)	37,770	23,447	20,831	15,722	(-63.4)	(0.3)
처분가능소득	3,673,534	3,682,894	(1.4)	3,652,217	3,748,044	3,684,011	3,738,651	(1.5)	(76.7)

주 1.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는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 통계에서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되어 연간 주기 공표 통계로 개편되었고, 가계소득 통계는 분기 작성

2. 처분가능소득의 구성비는 소득대비 상대비중(처분가능소득/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19년 3분기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명목소득은 전년동기대비 모두 증가하였으나, 근로자가구의 소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2019년 3분기 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561.0만원으로 전년동기(540.7만원)대비 3.7% (20.3만원)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380.1만원으로 전년동기(378.6만원)대비 0.4%(1.4만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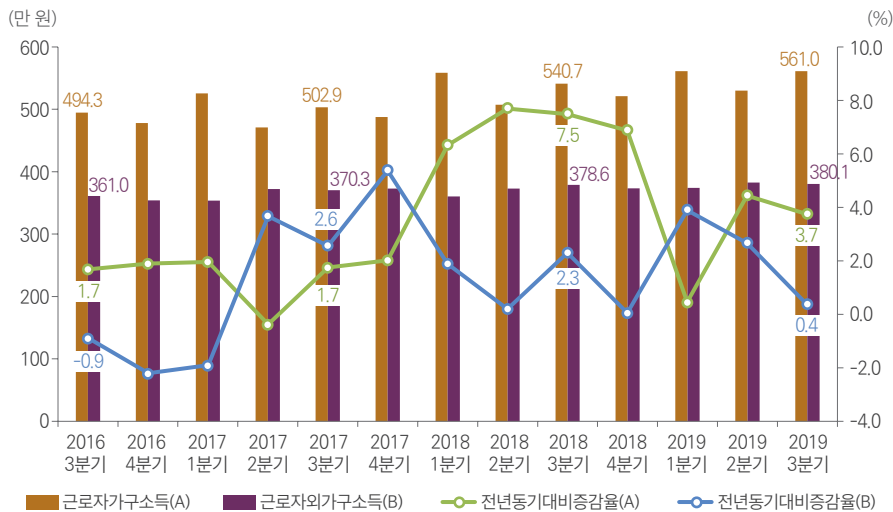
※ 근로자가구: 가구주가 정부나 기업(준법인기업 포함), 다른 가구에 고용되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 가구

※ 근로자외가구: 가구주가 근로자가구가 아닌 가구로 자영업자 또는 무직인 가구

근로자가구(A)와
근로자외가구(B)의
소득 격차(A/B)는
1.48배로 전년동기
대비 0.05배p 확대

- 근로자가구(A)와 근로자외가구(B)의 소득격차(A/B)는 1.48배로 전년동기(1.43배)대비 0.05배p 확대

[그림 1]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외가구의 (명목)소득 동향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구주 연령별) 2019년 3분기 30대 이하, 40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증가한 반면,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정체

- 전 연령대에서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50대 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폭(0.4%)이 30대 이하(7.0%), 40대(2.2%), 60대 이상(4.9%) 가구주 가구의 소득 증가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근로소득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3.4~11.1%)한 반면, 사업소득은 60대 이상 가구주 가구만 증가(3.2%)하고 다른 연령대에서는 감소(30대 -3.9%, 40대 -7.5%, 50대 -7.8%)

- 처분가능소득은 50대 가구(-0.5%)를 제외한 전 연령대 가구에서 증가하였는데, 30대 이하 가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5.9%)

전연령대에서 소득이
증가하였으나, 처분
가능소득은 50대 가
구주 가구만 감소

[표 2] 가구주 연령별 (명목)소득구성 및 처분가능소득

(단위: 원, 전년동기대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증감율	구성비
30대 이하	소득	4,647,373	4,742,278	4,700,540	5,068,269	4,815,956	5,075,260	(7.0)	(100.0)
	근로소득	3,458,463	3,682,489	3,667,336	3,905,004	3,678,618	3,909,411	(6.2)	(77.0)
	사업소득	764,213	654,534	590,800	549,865	641,830	629,092	(-3.9)	(12.4)
	재산소득	1,699	4,790	1,974	2,144	3,751	1,950	(-59.3)	(0.0)
	이전소득	366,995	361,411	398,425	592,897	451,267	494,722	(36.9)	(9.7)
	비경상소득	56,003	39,053	42,005	18,360	40,490	40,085	(2.6)	(0.8)
	처분가능소득	3,813,430	3,764,195	3,800,376	4,013,338	3,828,544	3,985,761	(5.9)	-
40대	소득	5,193,626	5,377,808	5,288,162	5,593,708	5,311,880	5,497,423	(2.2)	(100.0)
	근로소득	3,693,958	3,791,267	3,743,962	3,868,532	3,784,611	3,968,980	(4.7)	(72.2)
	사업소득	1,067,049	1,197,589	1,212,482	1,174,059	1,144,750	1,107,313	(-7.5)	(20.1)
	재산소득	9,757	5,920	7,235	5,658	15,864	14,636	(147.2)	(0.3)
	이전소득	303,330	363,517	315,051	535,911	360,217	397,139	(9.2)	(7.2)
	비경상소득	119,532	19,514	9,432	9,549	6,438	9,354	(-52.1)	(0.2)
	처분가능소득	4,199,595	4,154,089	4,163,135	4,311,753	4,114,996	4,193,768	(1.0)	-
50대	소득	5,404,469	5,735,380	5,377,871	5,625,783	5,514,300	5,757,963	(0.4)	(100.0)
	근로소득	4,003,714	4,203,231	3,901,731	4,079,609	4,033,338	4,344,892	(3.4)	(75.5)
	사업소득	1,078,398	1,171,206	1,142,011	1,126,695	1,137,848	1,080,126	(-7.8)	(18.8)
	재산소득	19,817	17,268	16,482	15,392	21,162	17,362	(0.5)	(0.3)
	이전소득	258,534	314,418	281,381	383,252	298,638	309,445	(-1.6)	(5.4)
	비경상소득	44,006	29,257	36,265	20,834	23,313	6,139	(-79.0)	(0.1)
	처분가능소득	4,330,284	4,331,307	4,120,192	4,237,472	4,179,419	4,310,328	(-0.5)	-
60대 이상	소득	2,970,433	3,290,914	3,262,597	3,341,908	3,420,203	3,451,279	(4.9)	(100.0)
	근로소득	1,279,216	1,519,678	1,568,586	1,574,728	1,636,022	1,688,004	(11.1)	(48.9)
	사업소득	709,848	601,459	600,816	610,127	634,234	620,446	(3.2)	(18.0)
	재산소득	40,281	45,895	42,134	34,285	46,795	36,025	(-21.5)	(1.0)
	이전소득	839,607	1,044,587	987,846	1,082,140	1,080,951	1,088,720	(4.2)	(31.5)
	비경상소득	101,480	79,295	63,214	40,628	22,201	18,084	(-77.2)	(0.5)
	처분가능소득	2,414,573	2,625,367	2,699,604	2,697,219	2,806,693	2,709,166	(3.2)	-

주: 구성비는 소득대비 상대비중(처분가능소득/소득 × 100)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소득분배수준

2019년 3분기 전 소득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전년동기대비 증가

- (명목소득) 1~4분위가구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3%, 4.9%, 4.1%, 3.7% 증가한 반면, 5분위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0.7% 증가
 - 1분위(137.4만원)와 5분위(980.0만원)의 소득격차는 842.6만원으로 2018년 3분기(841.8만원)에 비해 0.8만원 확대
 - 2018년 1분위에서 2019년 1분기까지 연속하여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던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2019년 2분기 0.0% 증가로 전환된 후 3분기에는 4.3% 증가
- (실질소득)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전 소득분위에서 전년동기대비 소득 증가
 - 1~3분위 가구의 소득은 각각 4.3%, 4.9%, 4.1% 증가한 반면, 5분위가구의 소득은 0.6% 증가

5분위가구의 소득은
1~4분위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

[표 3] 소득계층별 소득 동향

(단위: 원, 전년동기대비 %)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2019년 3분기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1분위	1,416,284 (0.0)	1,372,235 (-2.2)	1,317,568 (-7.0)	1,257,101 (-8.4)	1,374,396 (4.3)	1,310,696 (4.3)
2분위	2,856,627 (-1.6)	2,767,781 (-3.8)	2,842,758 (-0.5)	2,712,297 (-2.0)	2,982,096 (4.9)	2,843,883 (4.9)
3분위	4,063,917 (1.0)	3,937,523 (-1.2)	4,147,485 (2.1)	3,957,146 (0.5)	4,319,277 (4.1)	4,119,089 (4.1)
4분위	5,380,922 (0.9)	5,213,567 (-1.3)	5,691,086 (5.8)	5,429,907 (4.1)	5,903,943 (3.7)	5,630,310 (3.7)
5분위	8,948,054 (4.7)	8,669,755 (2.4)	9,735,687 (8.8)	9,288,891 (7.1)	9,800,240 (0.7)	9,346,023 (0.6)

주: 1. 실질소득은 통계청 자료에 한국은행의 소비자물가 지수(2015=100)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계산한 수치임

2.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규모가 큰 계층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근로자가구는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득이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가구는 저소득층인 1, 2분위와 고소득층인 5분위의 소득이 증가

- 근로자가구의 명목소득은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하였고, 실질소득 기준으로도 3.7% 증가
-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인 1, 2분위가구와 고소득층인 5분위가구의 명목소득은 증가한 반면, 3, 4분위가구의 소득은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0.4% 증가하였고, 실질소득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0.3% 증가

[표 4] 2019년 3분기 근로자가구 및 근로자외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 동향

(단위: 원, 전년동기대비 %)

	근로자가구		근로자외가구	
	명목소득	실질소득	명목소득	실질소득
전체	5,609,633 (3.7)	5,349,640 (3.7)	3,800,549 (0.4)	3,624,403 (0.3)
1분위	2,186,915 (8.7)	2,085,557 (8.7)	858,795 (2.2)	818,992 (2.1)
2분위	3,741,408 (8.3)	3,568,003 (8.3)	1,970,982 (0.3)	1,879,632 (0.2)
3분위	5,039,852 (6.0)	4,806,267 (5.9)	3,191,658 (-0.1)	3,043,733 (-0.1)
4분위	6,610,535 (4.1)	6,304,153 (4.1)	4,618,381 (-1.3)	4,404,331 (-1.4)
5분위	10,455,752 (0.0)	9,971,154 (0.0)	8,355,923 (1.3)	7,968,647 (1.3)

주: 1. 실질소득은 통계청 자료에 소비자물가 지수(2015=100)를 반영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계산한 수치임

2. 분위가 높을수록 소득규모가 큰 계층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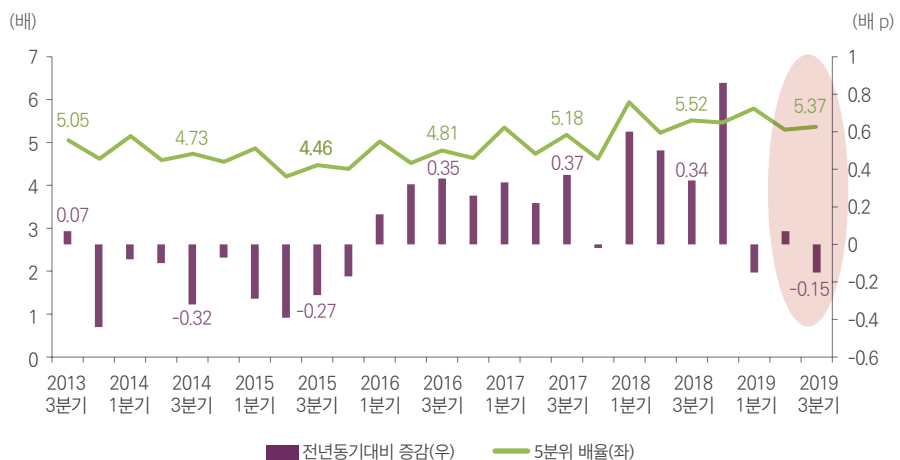
2019년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전년
동기대비 0.15배p 하락

(소득분배 수준) 2019년 3분기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이상)은 전년 동기대비 하락

- 2019년 3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배로 전년동기(5.52배)대비 0.15배p 하락

* 5분위 배율: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상위 20% 계층(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화

[그림 2] 분기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계의 비소비지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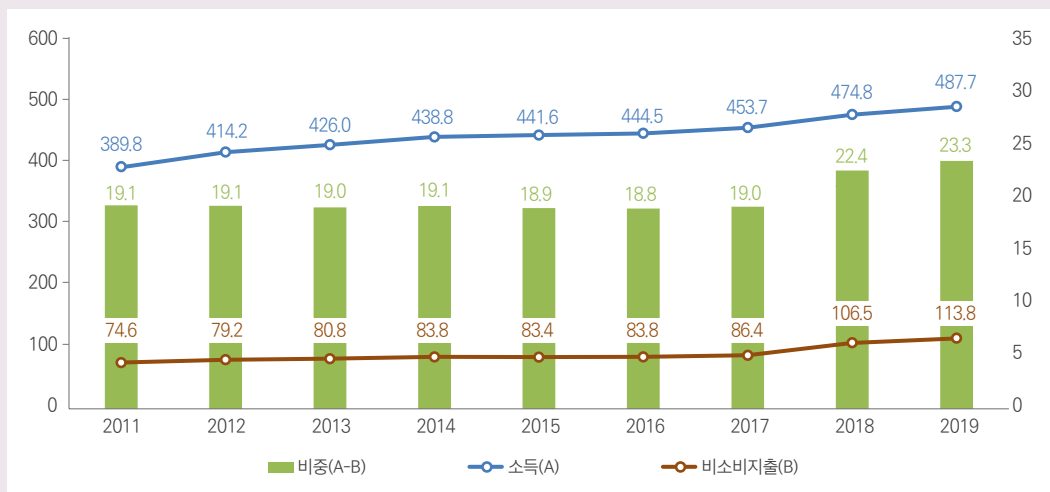
2019년 3분기 중 가계의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이후 최대치 기록

※ 가계의 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되는데,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지 않고, 대가없이 이전하는 지출을 의미

- 가계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2011년 3분기 19.1%에서 2019년 3분기 23.3%로 4.2%p 증가
- 3분기 기준 가계의 소득은 2011년 389.8만원에서 2019년 487.7만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은 2011년 74.6만원에서 2019년 113.8만원으로 연평균 6.0% 증가

전체 가구의 소득 및 비소비지출 추이(3분기 기준)

(단위: 만원,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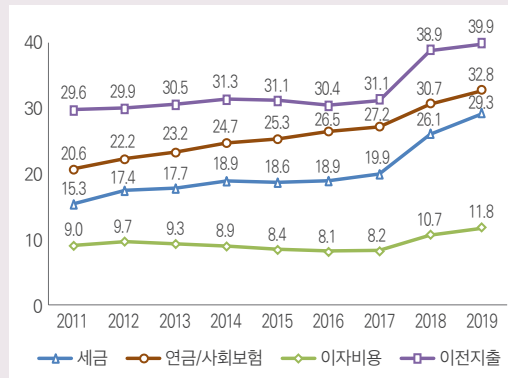
2011~2019년 기간의 3분기 비소비지출 구성항목 중 세금(경상조세+비경상조세)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전지출의 비중이 가장 큼

- 동기간 중 비소비지출 구성항목별 지출액은 세금이 연평균 8.4%, 연금 및 사회보험 6.0%, 이전지출 3.8%, 이자비용 3.5% 순으로 증가
- 2019년 3분기 비소비지출 구성항목 중 이전지출이 3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1년 39.7% 대비 4.6%p 감소하였고, 세금은 2011년 20.5%에서 2019년 25.7%로 5.2%p 증가

비소비지출 항목별 금액 및 비중 추이(3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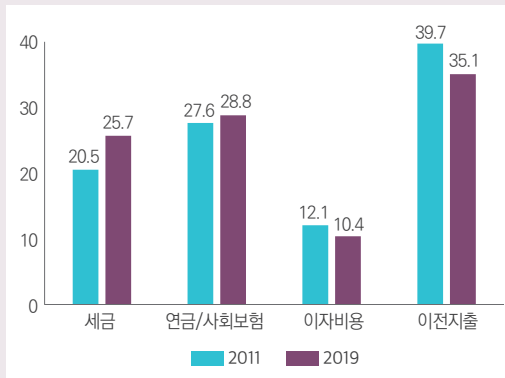
항목별 금액 추이

(단위: 만원)



항목별 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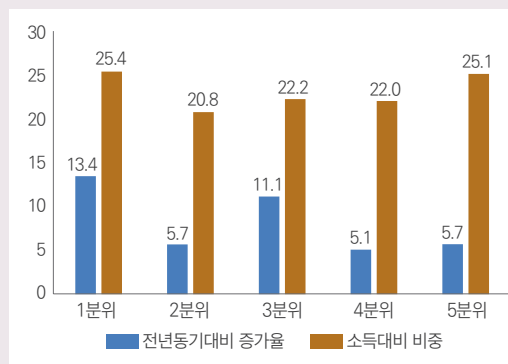
2019년 3분기 중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가구,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 (소득분위별) 1분위 가구의 비소비지출이 가장 큰 폭(13.4%)으로 증가하였고, 비소비지출의 소득대비 비중도 1분위 가구가 25.4%로 가장 높았음
- (연령별) 60대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득증가율(4.9%)을 상회하는 11.5% 수준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비소비지출의 소득대비 비중은 50대 가구가 24.5%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소득의 약 1/4 수준이 소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득분위별 및 가구주 연령별 비소비지출(2019년 3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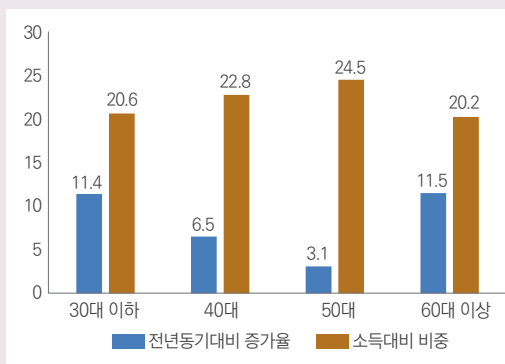
소득분위별

(단위: %)



연령별

(단위: %)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동산시장
동향

1. 주택 매매가격 동향

2019년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전월 대비)은 0.19%,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 대비)은 0.22%로 증가율이 소폭 상승

-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9월부터,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으며, 전월대비 상승폭이 확대되는 추세
 - 서울(7월), 경기(8월), 인천과 광주(9월), 울산과 세종(10월), 부산(11월)의 주택매매가격이 차례로 상승세로 전환
 -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대구, 대전, 전남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하락폭의 변화는 상이함
- 2019년 1~11월 기간 동안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전남 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이외 지역은 하락하였으며, 대전,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

2019년 11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증가
율은 전월대비 0.19%
로 소폭 상승

[표 1] 지역별 주택매매가격 변동¹⁾

(단위: %)

	주택 매매가격 변동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					
	2018년 1-11월	2019년					2018년 1-11월	2019년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8월	9월	10월	11월	1-11월
전국	1.11	-0.05	0.01	0.12	0.19	-0.74	0.28	-0.14	-0.05	0.11	0.22	-1.93
서울	6.18	0.14	0.17	0.44	0.50	0.38	8.21	0.14	0.19	0.60	0.69	-0.13
경기	1.84	0.01	0.11	0.19	0.28	-0.65	1.72	-0.02	0.10	0.20	0.34	-1.43
인천	0.36	-0.10	0.16	0.14	0.23	0.16	-0.33	-0.23	0.17	0.09	0.27	-0.21
부산	-1.32	-0.16	-0.16	-0.12	0.05	-1.76	-3.18	-0.30	-0.29	-0.25	0.00	-3.27
대구	3.18	0.03	0.09	0.18	0.22	0.91	2.86	-0.14	-0.04	0.12	0.18	-0.37
광주	3.45	-0.01	0.01	0.02	0.11	0.44	3.11	-0.14	-0.08	-0.04	0.04	-0.47
대전	2.02	0.77	0.93	1.22	1.17	5.59	1.88	0.95	1.18	1.54	1.48	6.55
울산	-6.04	-0.27	-0.19	0.04	0.18	-3.34	-8.84	-0.27	-0.21	0.14	0.35	-4.24
세종	2.12	-0.08	0.00	0.10	0.03	-1.75	1.04	-0.20	-0.13	0.02	-0.02	-3.11
강원	-1.27	-0.42	-0.37	-0.15	-0.10	-2.77	-4.14	-0.89	-0.82	-0.37	-0.26	-6.19
충북	-2.17	-0.35	-0.24	-0.25	-0.10	-3.16	-5.46	-0.55	-0.43	-0.43	-0.34	-6.16
충남	-1.68	-0.18	-0.11	-0.07	-0.07	-1.69	-4.25	-0.29	-0.21	-0.11	-0.05	-3.21
전북	-0.06	-0.14	-0.19	-0.10	-0.14	-1.37	-1.77	-0.41	-0.51	-0.27	-0.32	-3.97
전남	2.47	0.15	0.13	0.15	0.18	1.71	1.59	0.03	-0.01	0.06	0.01	0.13
경북	-1.65	-0.19	-0.16	-0.15	-0.14	-2.15	-5.20	-0.51	-0.46	-0.38	-0.33	-5.61
경남	-4.36	-0.40	-0.39	-0.30	-0.13	-3.48	-7.94	-0.66	-0.58	-0.44	-0.20	-5.65
제주	0.82	-0.34	-0.37	-0.47	-0.53	-2.29	-2.77	-0.42	-0.49	-0.43	-0.46	-3.27

주: 1)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며,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율을 의미

2) 음영은 2019년 1~11월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지역을 의미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주택 매매거래량 동향

2019년 1~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간대비 14만
1,290건(19.2%) 감소

2019년 1~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59만 4,400건으로 전년 동기간 거래량(73만 5,700건)에 비해 약 19.2% 감소

- 2019년 1~10월 기간 동안 대전, 울산, 충남, 경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감소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택거래량이 총 12만 3,840건 감소하였으며, 이외 지방은 약 1만 7,450건 감소
 - 아파트 거래량 감소는 수도권 9만 3,058건, 지방 4,810건임
 - 충북과 경북의 경우 주택 매매거래량은 감소하였으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증가

[표 2] 지역별 주택매매거래량¹⁾

(단위: 천건)

	주택 매매거래량						아파트 매매거래량					
	2018년 1~10월	2019년					2018년 1~10월	2019년				
		7월	8월	9월	10월	1~10월		7월	8월	9월	10월	1~10월
전국	735.7	67.3	66.5	64.1	82.4	594.4	488.2	44.4	45.5	44.0	58.3	390.4
서울	154.7	12.3	13.5	11.8	14.1	91.9	90.5	7.0	8.6	7.1	8.3	46.7
경기	207.6	17.0	16.6	16.7	22.2	148.3	146.4	11.4	11.4	11.4	16.1	98.3
인천	49.5	5.2	5.2	4.9	6.1	47.7	27.9	2.9	2.9	2.8	3.8	26.7
부산	41.8	3.7	3.8	3.9	4.9	36.3	24.7	2.3	2.5	2.6	3.4	23.3
대구	40.3	4.1	3.4	3.3	4.1	33.0	30.4	2.7	2.4	2.4	3.1	22.9
광주	30.7	2.2	2.2	2.1	2.8	22.0	23.7	1.7	1.8	1.7	2.2	17.0
대전	22.9	3.1	3.1	3.1	3.9	26.8	17.1	2.4	2.5	2.5	3.2	20.7
울산	9.5	1.3	1.2	1.2	2.0	12.1	7.3	1.1	1.0	1.0	1.8	10.3
세종	4.0	0.3	0.4	0.4	0.5	3.5	3.6	0.3	0.4	0.3	0.4	3.1
강원	19.1	1.8	1.7	1.7	2.4	17.7	12.1	1.2	1.2	1.1	1.7	11.6
충북	18.7	2.0	2.0	2.0	2.5	18.5	12.8	1.4	1.5	1.4	1.9	13.3
충남	25.0	2.9	2.8	2.7	3.4	27.9	17.8	2.1	2.0	1.8	2.6	20.7
전북	23.2	2.2	2.2	2.5	2.4	21.3	16.5	1.6	1.6	2.0	1.7	15.6
전남	23.2	2.1	2.2	1.8	2.4	22.1	15.7	1.3	1.5	1.3	1.6	14.9
경북	27.0	3.1	2.6	2.6	3.5	27.0	16.9	2.1	1.7	1.7	2.5	17.9
경남	31.0	3.3	3.0	3.0	4.4	32.2	22.0	2.5	2.4	2.4	3.6	25.1
제주	7.8	0.6	0.6	0.5	0.7	6.2	2.8	0.2	0.2	0.2	0.3	2.2

주: 1)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의 유형을 모두 포함

2) 음영은 2019년 1~10월 주택 및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한 지역을 의미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 동향

2019년 3분기 전국의 상업용부동산의 임대가격은 오피스(-0.18%), 중대형 상가(-0.18%), 소규모상가(-0.17%) 등으로 유형에 무관하게 하락

2019년 3분기 전국의 상업용부동산 임대 가격은 전기대비 하락

- 오피스(업무시설)는 경기,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2019년 3분기)
 - 일부 상권의 임차수요가 있는 경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의 기업 경기 둔화 및 수요 감소로 가격 하락
- 상가(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는 규모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1~2분기에 비해 하락한 지역이 증가(2019년 3분기)
 - 중대형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서울(0.09%), 경기(0.03%), 인천(0.07%), 강원(0.06%)지역에서 상승하였으나, 부산(-1.27%)은 지역경기 부진 및 공실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 소규모 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인천(0.23%)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하락하였으며, 부산(-0.97%), 충남(-0.44%), 경남(-0.40%)순으로 하락세를 보임
 - 집합상가 임대가격지수는 인천(0.25%), 대구(0.03%), 경기(0.02%)는 상승했고, 이외 지역은 모두 하락

[표 3] 상업용부동산 임대가격 변동¹⁾

(단위: %)

	오피스			상가								
				중대형			소규모			집합		
	'19.Q1	'19.Q2	'19.Q3	'19.Q1	'19.Q2	'19.Q3	'19.Q1	'19.Q2	'19.Q3	'19.Q1	'19.Q2	'19.Q3
전국	0.00	-0.03	-0.18	-0.12	-0.06	-0.18	-0.18	-0.17	-0.17	-0.10	-0.25	-0.19
서울	0.06	0.00	-0.06	0.02	0.13	0.09	-0.08	0.06	-0.05	0.03	-0.07	-0.06
경기	0.20	0.02	0.17	-0.07	0.02	0.03	-0.04	-0.21	-0.06	-0.05	-0.10	0.02
인천	0.13	0.08	-0.33	0.11	0.25	0.07	0.00	0.13	0.23	-0.01	0.21	0.25
부산	-0.16	-0.08	-1.51	-0.19	-0.01	-1.27	-0.28	0.11	-0.97	-0.09	-0.34	-1.29
대구	-0.28	-0.09	-0.16	0.11	-0.09	-0.04	-0.04	-0.09	-0.06	-0.18	-0.05	0.03
광주	-0.25	0.04	-0.14	-0.03	0.05	-0.05	0.22	0.06	-0.20	0.00	-0.07	-0.05
대전	-0.10	-0.52	-0.33	-0.25	0.16	-0.27	-0.21	0.01	-0.04	-0.32	-0.21	-0.70
울산	-0.29	-0.14	-0.21	-0.37	-0.59	-0.22	-0.69	-0.37	-0.31	-0.33	-0.98	-0.59
세종	0.00	0.00	0.00	-0.31	-0.08	-0.35	-0.34	-0.06	-0.09	-0.28	-3.42	-0.44
강원	-0.39	-0.24	0.08	-0.02	-0.15	0.06	0.02	-0.14	-0.16	-0.11	0.07	-0.39
충북	0.00	-0.08	-0.89	-0.22	0.03	-0.43	-0.32	0.01	-0.07	-0.24	-0.31	-0.39
충남	0.00	-0.08	-1.36	-0.37	-0.20	-0.06	-0.36	-0.39	-0.44	-0.05	-0.12	-0.73
전북	-0.18	-0.20	-0.43	-0.48	-0.49	-0.12	-0.50	-0.44	-0.16	-0.46	-0.21	-0.20
전남	-0.21	-0.02	-0.10	0.02	0.16	-0.17	-0.17	-0.04	-0.03	0.07	-0.12	-0.31
경북	-0.38	-0.14	-0.31	-0.36	-0.35	-0.69	-0.07	-0.29	-0.01	-0.10	-0.30	-0.21
경남	-0.33	-0.24	-0.50	-0.25	-0.64	-0.40	-0.41	-0.25	-0.40	-0.47	-1.09	-0.32
제주	-0.02	-0.03	-0.03	-0.27	-0.25	-0.12	-0.29	-0.22	-0.33	-0.08	-0.82	-0.18

주: 1) 임대가격지수의 전기대비 변동률

2) 음영은 전기대비 임대가격지수 변동률이 상승한 지역을 의미

3) 중대형 상가는 주용도가 상가이고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인 일반건축물(1동의 전체로서 하나의 소유권으로 성립된 건물), 소규모 상가는 주용도가 상가이고 2층 이하이며 연면적 330㎡ 이하인 일반건축물, 집합상가는 집합건축물(1동의 건물중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구분 소유되어 있는 건물)의 상가임

자료: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4.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

2019년 3분기 전국의
상업용부동산 수익
률은 전기대비 하락

2019년 3분기 전국의 상업용부동산의 투자수익률은 오피스 1.83%, 중대형상가 1.43%, 소규모상가 1.27% 집합상가 1.36% 수준으로 모든 유형에서 전기대비 하락

- 오피스는 수도권이 2%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주(0.42%), 경남(0.52%), 대전(0.69%)은 낮은 수준
- 상가는 규모별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도가 높은 수익률을 보이며, 제주, 울산, 경남(집합상가 제외)은 0.37~0.67% 이내의 낮은 수익률을 보임
 - 중대형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서울(1.88%), 인천(1.80%), 경기(1.73%) 등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제주(0.41%), 울산(0.67%)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소규모 상가의 경우 인천과 대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의 수익률이 전기에 비해 감소
 - 집합 상가의 투자수익률은 인천(1.84%), 경기(1.70%), 대전(1.66%) 등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음

[표 4] 상업용부동산 투자수익률¹⁾

(단위: %)

	오피스			상가								
				중대형			소규모			집합		
	'19.Q1	'19.Q2	'19.Q3	'19.Q1	'19.Q2	'19.Q3	'19.Q1	'19.Q2	'19.Q3	'19.Q1	'19.Q2	'19.Q3
전국	1.69	1.84	1.83	1.50	1.53	1.43	1.36	1.40	1.27	1.77	1.55	1.36
서울	1.86	2.09	2.13	1.73	1.88	1.88	1.61	1.77	1.71	2.04	1.70	1.34
경기	2.19	2.04	2.04	1.68	1.77	1.73	1.54	1.66	1.58	1.87	1.74	1.70
인천	1.93	1.75	2.03	1.91	1.78	1.80	1.63	1.63	1.65	2.07	1.88	1.84
부산	1.69	1.53	1.07	1.75	1.62	1.19	1.64	1.66	1.26	1.54	1.35	1.11
대구	1.29	1.40	1.76	1.37	1.38	1.48	1.28	1.30	1.38	1.39	1.47	1.16
광주	1.50	1.38	1.37	1.76	1.71	1.60	1.71	1.67	1.62	2.01	1.63	1.46
대전	0.59	1.01	0.69	1.20	1.44	1.34	1.27	1.52	1.47	1.08	1.20	1.66
울산	1.42	1.21	0.70	1.24	1.09	0.67	1.09	1.00	0.47	1.51	1.39	0.72
세종	-	-	-	1.18	1.45	1.02	1.24	1.49	1.09	0.91	0.45	1.22
강원	1.10	1.13	0.72	1.37	1.16	1.03	1.24	1.22	1.12	1.31	1.24	1.02
충북	1.04	1.11	1.02	1.10	1.35	1.15	1.04	1.14	0.92	1.21	0.79	1.37
충남	0.80	0.81	1.36	1.03	1.05	1.01	1.03	1.17	1.16	1.30	1.13	0.73
전북	1.11	1.20	1.06	1.34	1.27	1.21	1.32	1.29	1.20	1.35	1.24	1.23
전남	1.10	1.06	1.15	1.39	1.41	1.30	1.53	1.47	1.41	1.56	1.40	1.43
경북	0.81	0.97	0.81	1.04	1.15	0.98	1.19	1.27	1.10	1.31	1.24	1.22
경남	0.89	0.80	0.52	0.92	0.84	0.55	1.01	0.89	0.60	1.32	1.20	1.26
제주	1.02	0.40	0.42	1.09	0.52	0.41	1.06	0.50	0.37	1.34	0.76	0.41

주: 1) 투자수익률은 임대료 등의 소득수익률과, 부동산가격 증감에 따른 자본수익률을 합산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BOX '상업용부동산 임대조사' 자료 참조

2) 음영은 전기대비 투자수익률이 상승한 지역을 의미

자료: 국토교통부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¹⁾

전국의 상업용부동산(오피스, 상가)의 투자성과 측정 및 시장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2년 연간조사를 시작했고 2009년부터는 분기별로 조사

- 표준지 공시지가의 수익방식 평가에 활용하며, 부동산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사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
- 일반건물 7,783동 및 집합건물 23,000호(건물유형별 임대면적 50% 이상인 건물)
 - 상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조사하고, 오피스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를 조사

산출 통계로는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순영업소득이 있음

- 투자수익률은 해당 분기의 자본에 대한 전체 수익률로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합계
 - 소득수익률: 해당 분기동안 발생한 순영업소득(임대료 등)을 기초 자산가치(당해 분기초)로 나눈 것
 - 자본수익률: 해당 분기동안 부동산 자산가치의 증감으로 인한 수익률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의 증감을 기초 자산가치(당해 분기초)로 나눈 것
- 공실률은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자가, 분양 등의 방법으로도 이용되지 않는 오피스/상가 빌딩의 빈공간의 비율을 의미
 - 해당지역 공실면적의 합을 연면적의 합으로 나누어 산출
- 임대료는 임차인이 일정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지불하는 총비용의 추정을 목적으로 계약임대료(임차인과 임대인이 실제 계약한 금액)를 이용하여 산정
 - 환산임대료* ÷ 임대가능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 ※ 환산임대료: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과 월세액을 전환율을 이용하여 보증금이 없는 경우의 월세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임차인이 납부하는 관리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
- 임대가격지수는 임차인이 일정공간을 점유하기 위해 지불하는 총 비용의 두 시점 간의 변화 추정을 위해 기준 시점(2018년 4분기) 대비 표본건물 기준층의 시장임대료*를 이용하여 산정
 - ※ 시장임대료: 임차인과 임대인이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해당 시점에서의 거래가능가격
- 순영업소득은 대상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유효조소득(임대수입, 기타수입)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
 - 임대수입 = 총 월세수입 + 총 보증금 운영수입 + 총 실비 + 총 관리비
 - 기타수입: 주차수입, 회의실 임대수입, 자판기 관련수입, 광고판 및 송신탑 임대수입, 창고임대수입 등
 - 운영경비: 청소비용, 시설유지비용, 수도광열비용, 주차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보안경비, 조경관리비용, 임대관련비용, 일반관리비용 등

1) 한국감정원, 2019년 3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보고서 참조

금융 및 원자재 시장 동향

1. 금융시장 동향

가. 신용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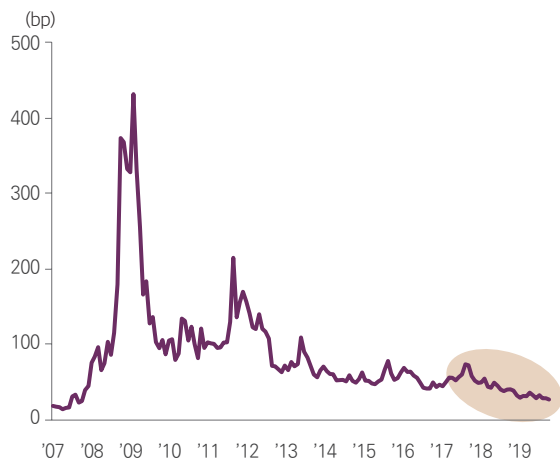
최근 국내 신용위험지표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진국과 신흥국의 신용위험지표는 하락세

- 한국 신용위험지표는 대북리스크의 부각에도 안정세를 지속

— 한국 CDS프리미엄¹⁾은 10~11월 북한의 3차례 방사포 및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3분기말 대비 1.8bp 하락한 27.2bp 기록

※ 한국 CDS프리미엄(bp) : 432('09.2월말)→ 29('19년 9월말)→ 27(11월말)

[그림 1] 한국 CDS프리미엄 장기 추이



자료: Bloomberg

[표 1] 한국 CDS프리미엄 최근 동향

(단위: bp)

구분	'18년	'19년			
	4분기	2분기	3분기	11월	전분기말 대비
한국CDS 프리미엄	39.0	33.0	29.0	27.2	-1.8

주: 데이터는 분기(월)말기준

국내 및 글로벌 금융
시장 신용위험 지표
전반적 하락세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인 신흥국 채권가산금리²⁾와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미·중 무역분쟁의 타결 가능성 부각 등으로 하락세

— 2019년 11월 중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가 높아지며 위험지표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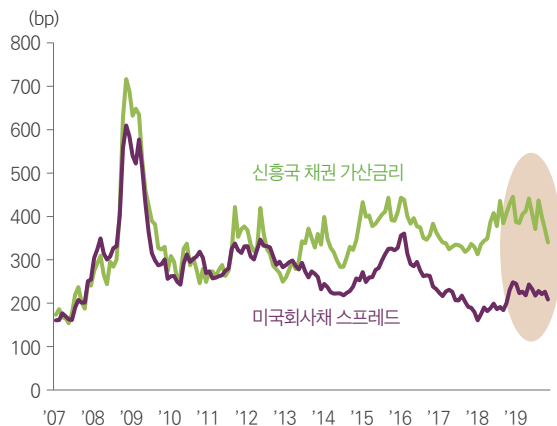
※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bp): 718('08.11월말)→ 400('19.9월말)→ 340(11월말)

※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bp): 611('08.11월말)→ 220('19.9월말)→ 207(11월말)

1)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하며 신용위험도가 낮으면 하락

2)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 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지며 금융시장이 안정화 될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는 하락

[그림 2]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장기 추이



자료: Bloomberg

[표 2] 신용위험 지표 최근 동향

(단위: bp)

구분	'18년	'19년			전분기말 대비
	4분기	2분기	3분기	11월	
신용국 채권 가산금리	445.3	405.9	399.6	339.6	-60.0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247.6	231.5	219.6	207.4	-12.2

주: 데이터는 분기(월)말 기준

나. 금리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는 상승세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 등으로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는 상승세
 - 미국 국채 10년물의 11월 금리는 9월말 대비 11bp 상승하였으며, 한국 국채 10년물 금리도 전분기말 대비 18bp 상승
- 유로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 경기개선 기대 등으로 상승세
 - 유로존, 일본 국채 10년물 11월 금리는 상승세를 보이며 9월말 대비 각각 21bp, 14bp 상승한 -0.36%, -0.07% 기록

글로벌 국채금리는
상승세

[그림 3]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표 3] 주요국 국채 10년물 금리 동향

(단위: %)

구분	'18년	'19년			전분기말 대비 (bp)
	4분기	2분기	3분기	11월	
한국	1.96	1.60	1.46	1.64	17.5
미국	2.68	2.01	1.66	1.78	11.1
유로존	0.24	-0.33	-0.57	-0.36	21.1
일본	0.00	-0.16	-0.21	-0.07	14.0

주: 데이터는 분기(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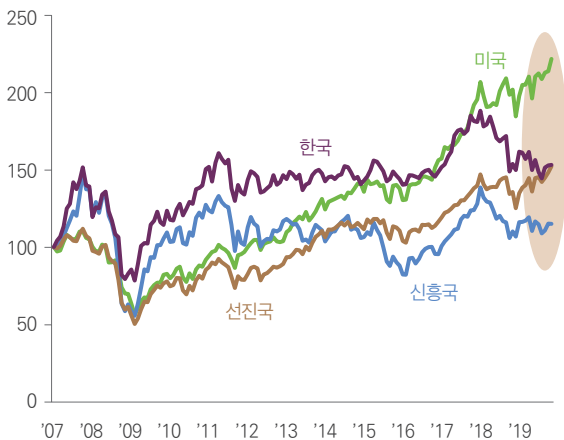
다. 주가

글로벌 주가는 전반적 상승세

글로벌 주가는 전반
적 강세

-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 연준, ECB 등의 통화정책 완화기조, 미·중 무역분쟁 우려 약화 기대 등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가 모두 강세
 - 2019년 11월 기준 선진국 주가는 9월말 대비 5.1% 상승한 가운데 신흥국 주가도 9월말 대비 3.9% 상승
- 미국 및 우리나라 주가도 대외불확실성 완화, 확장적 통화정책 등으로 상승세
 - 2019년 11월 기준 미국 Dow Jones지수, 우리나라 KOSPI지수는 9월말 대비 각각 4.2%, 1.2% 상승

[그림 4] 주요 주식시장 추이



주: 2007년 1월 데이터 값을 100으로 조정
자료: Bloomberg

[표 4] 주요 주가지수 동향

(단위: pt)

구분	'18년	'19년			전분기말 대비 (%)
	4분기	2분기	3분기	11월	
한국	2,041	2,131	2,063	2,088	1.2
미국	23,327	26,600	26,917	28,051	4.2
선진국	1,884	2,178	2,180	2,292	5.1
신흥국	966	1,055	1,001	1,040	3.9

주: 1) 미국 Dow Jones, 한국 KOSPI, 선진국, 신흥국은 MSCI 지수 기준
2) 데이터는 분기(월)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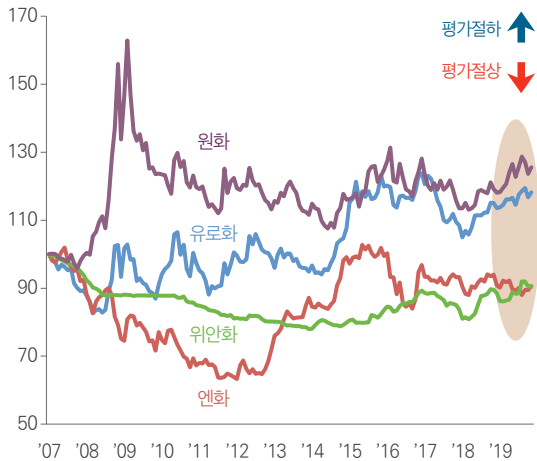
라. 외환

최근 주요국 통화의 대달러 환율은 차별화 양상

주요국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는 차별화

- 유로화, 원화, 위안화의 달러화 대비 가치는 상승세
 - 11월 달러대비 유로화 가치는 브렉시트 우려 완화 등으로 9월말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한국 원화가치는 미·중 무역분쟁 우려 완화 등으로 1.3% 상승
 - 11월 위안화 가치도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 등으로 1.6% 상승
- 반면 엔화가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1.3% 하락
 - 11월 달러인덱스는 9월말 대비 1.1% 하락한 98.3 기록

[그림 5] 주요 통화 대비환율 추이



주: 2007년 1월 데이터 값을 100으로 조정
자료: Bloomberg

[표 5] 주요 통화 환율 동향

구분	'18년	'19년			전분기말 대비 절상률(%)
	4분기	2분기	3분기	11월	
유로화	0.87	0.88	0.92	0.91	1.08
엔화	109.7	107.9	108.1	109.5	-1.30
위안화	6.88	6.87	7.15	7.03	1.62
원화	1,111	1,155	1,196	1,181	1.25
달러 인덱스	96.2	96.1	99.4	98.3	-1.11

주: 1) 달러인덱스를 제외한 환율은 모두 미국 \$1대비 환율
2) 데이터는 분기(월)말기준

2. 원자재 및 농산물(식품)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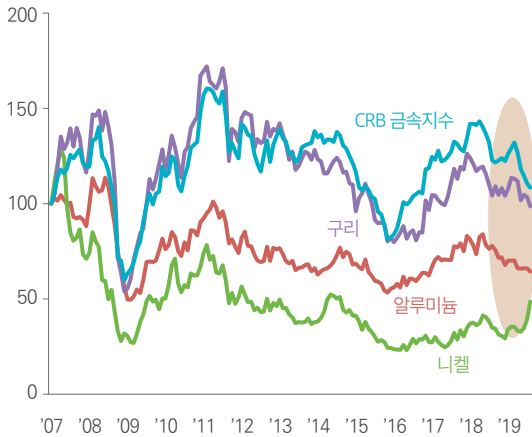
최근 주요 금속 원자재 가격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 상승세

- 2019년 11월 CRB금속가격지수³⁾는 9월말 대비 0.6% 상승한 가운데 구리, 알루미늄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2.4%, 2.8% 상승
 - 반면 니켈은 스테인리스 가격하락 등으로 19.8% 하락
- 향후 주요국 경기둔화, 홍콩 시위와 관련된 미·중 갈등 확대 우려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금속원자재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미국 11월 ISM 제조업 지수⁴⁾는 48.1로 4개월 연속 50을 하회

3) CRB금속가격지수는 국제적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가 철, 구리, 납, 아연, 주석 가격을 기반으로 산출하여 발표하는 금속 가격지수

4) 미국 실물경제의 대표적인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넘을 경우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된다는 것을, 50 이하일 경우 수축된다는 것을 의미

[그림 6] 주요 금속 가격 추이



주: 2007년 1월 데이터 값을 100으로 조정
자료: Bloomberg

[표 6] 주요 금속 가격 동향

구분	'18년	'19년			전분기말 대비 (%)
	4분기	2분기	3분기	11월	
CRB 금속지수	830	777	720	725	0.6
구리	5,965	5,993	5,725	5,864	2.4
니켈	10,690	12,690	17,050	13,670	-19.8
알루미늄	1,846	1,800	1,722	1,770	2.8

주: 1) CRB 금속지수를 제외한 구리, 니켈, 알루미늄은 톤당 가격
2) 데이터는 분기(월)말기준

금속 및 농산물 가격
은 전반적 강세

10월 농산물 및 식품가격 지수는 미·중 무역분쟁 타결 가능성이 부각되며 소폭 상승

- UN 농산물 및 식품가격 지수는 2019년 9월 169.7에서 10월 172.7로 1.7% 상승
- 향후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 농업기상 여건 등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확대될 소지

[그림 7] 농산물 및 식품 가격 추이



주: 2007년 1월 데이터 값을 100으로 조정
자료: Bloomberg

[표 7] 농축산물 및 식품 가격 동향

구분	'18년	'19년			전분기말 대비 (%)
	4분기	2분기	3분기	10월	
UN 농산물 및 식품지수	161.5	173.2	169.7	172.7	1.7

주: 데이터는 분기(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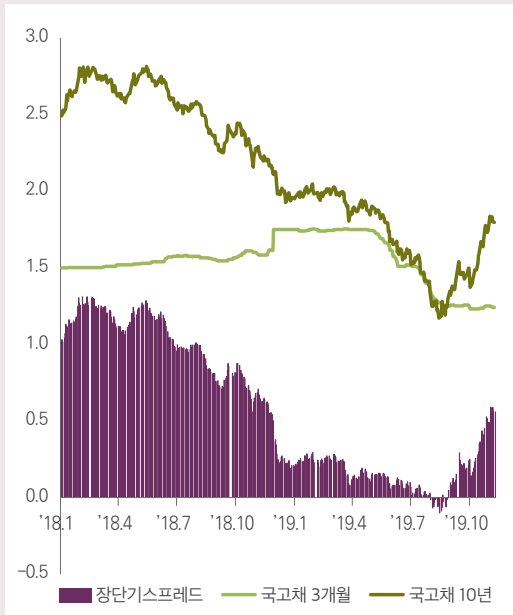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동향

최근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확대 양상

-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2018년 이후 전반적인 축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 8월 이후 장기금리 상승 등으로 확대 지속
 - 국고채 10년물과 3개월물 간 금리스프레드는 2019년 8월초 3bp 수준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2019년 11월말 39bp로 확대
- 단기금리 대비 장기금리 상승폭 확대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며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은 대부분 소멸
 - 2019년 8월에 존재했던 국고채 3개월물~1년물, 2~3년물 간에 금리역전 현상은 11월말 사라짐
- 한편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확대는 주로 기간 프리미엄 상승에 기인
 - 기간 프리미엄은 금리 변동, 인플레이션 등 장기채 보유 위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며, 장기채 수급에도 영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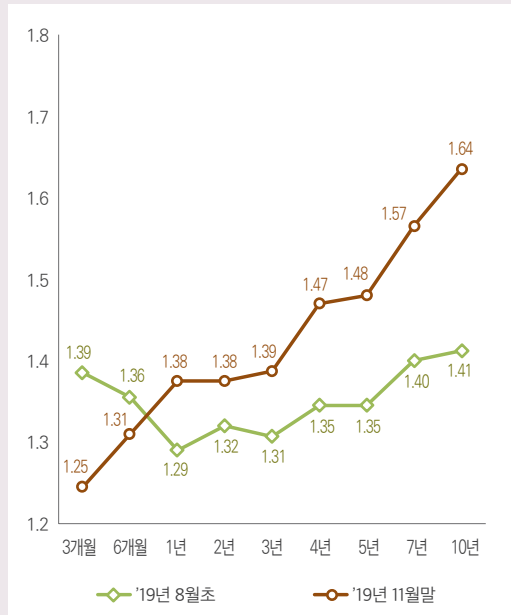
장단기 금리 차이

(단위: %)



국고채 만기별 수익률 곡선

(단위: bp)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주: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10년)금리-국채(3월) 금리

자료: 증권거래소

지역 R&D투자의 효율성 분석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신동진 경제분석관(788-4678)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R&D투자가 확대되면서 양적 성과는 증가한 데 비해 질적 성과는 감소하여 효율성 측정 필요

- 16개 시도의 지역 연구개발비는 2008년 34.5조원에서 2017년 78.3조원으로 증가하여 양적 지표인 특허(출원)수는 2008년 12.7만개에서 2017년 15.9만개로 증가하였으나, 질적 지표인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는 2008년 1.9억원에서 2017년 0.5억원으로 감소

지역 R&D투자의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기법으로 분석한 결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의 효율성(0.39)은 제2차 기간의 효율성(0.47)보다 낮아 분석기간 동안 준거집단(reference set)과의 효율성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지역 R&D투자 효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구조적 전환이 발생한 2008년 0.60에서 2014년 0.30까지 하락한 이후 2015년 0.47까지 반등한 뒤 2017년 0.35까지 하락
-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국 효율성 수준보다 낮은 6개 광역시를 비롯하여 경기도를 제외한 9개 도 지역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 자원배분방향 설정 필요
 - 수도권 R&D투자 효율성은 2008년 0.98에서 2017년 0.83으로 하락하였으나, 전 기간에 걸쳐 전국 효율성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6개 광역시별 R&D투자 효율성은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
 -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효율성은 2008년 0.33에서 2017년 0.15까지 하락하여 전국 효율성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제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은 인프라 진부화로 인해 혁신성장 즉, 내생적 성과창출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재정자립도와 실질GRDP 즉, 지역경제 인프라가 지역 R&D투자 효율성 값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지역별 효율성 격차가 지역 간 불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지역 R&D투자 효율성 값과 연구개발수행조직 수, 기술이전/사업화 수 및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타 지역의 혁신성장 확산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R&D투자 효율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성과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서론 - 지역 R&D투자 현황 및 분석 목적

세계 각국은 기술혁신을 경제발전의 내생적 결정요인¹⁾으로 인식하면서 지역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 역할을 하는 지역 R&D투자(민간 + 공공 부문 연구개발비)의 중요성을 강조²⁾

- 제2차(2008~2012년) 및 제3차(2013~2017년)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R&D 투자는 2008년 34.5조원에서 2017년 78.3조원까지 확대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계획으로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인력·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등을 담고 있음(「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참조)

— 2017년 기준으로 서울(16.8%)과 경기도(49.1%) 지역은 R&D투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제주도(0.2%) 지역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지역 연구개발비(민간 + 공공 부문) 현황

(단위: 조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서울	7.2	20.8	7.3	19.3	8.2	18.8	9.2	18.5	9.9	17.9	10.7	18.1	9.6	15.2	10.0	15.3	10.5	15.2	13.2	16.8
부산	0.7	2.2	0.8	2.1	0.8	1.9	0.9	1.8	1.0	1.9	1.0	1.6	1.1	1.7	1.3	2.0	1.2	1.8	1.4	1.8
대구	0.5	1.5	0.5	1.4	0.6	1.3	0.7	1.4	0.8	1.5	0.8	1.4	1.0	1.5	1.1	1.7	1.2	1.7	1.2	1.6
인천	1.4	4.1	1.4	3.8	1.7	3.8	2.0	4.0	2.1	3.8	2.1	3.6	2.3	3.6	2.5	3.8	2.4	3.5	2.5	3.3
광주	0.5	1.5	0.5	1.4	0.5	1.2	0.7	1.4	0.7	1.2	0.6	1.0	0.7	1.1	0.7	1.1	0.8	1.2	0.8	1.0
대전	3.9	11.4	4.4	11.5	5.0	11.4	5.6	11.2	5.6	10.0	5.9	10.0	6.3	10.0	6.7	10.2	7.3	10.6	7.7	9.8
울산	0.4	1.2	0.4	1.0	0.5	1.0	0.7	1.5	0.7	1.3	0.7	1.3	0.8	1.3	1.0	1.5	0.8	1.2	0.7	0.9
경기	13.6	39.3	15.6	41.0	18.3	41.8	20.8	41.8	25.2	45.4	27.3	46.2	31.0	49.0	31.8	48.6	33.1	47.9	38.5	49.1
강원	0.3	0.7	0.3	0.7	0.3	0.6	0.3	0.7	0.4	0.6	0.4	0.6	0.4	0.6	0.4	0.6	0.4	0.6	0.5	0.6
충북	0.6	1.9	0.6	1.6	0.8	1.8	0.9	1.8	1.0	1.7	1.1	1.8	1.3	2.0	1.4	2.1	2.1	3.1	2.2	2.8
충남	1.7	5.0	2.1	5.6	2.7	6.1	2.9	5.9	2.5	4.6	2.6	4.4	2.3	3.7	2.3	3.5	3.0	4.3	2.6	3.3
전북	0.4	1.1	0.5	1.3	0.5	1.2	0.7	1.3	0.8	1.4	0.9	1.5	0.9	1.4	0.8	1.2	0.9	1.3	1.0	1.3
전남	0.3	1.0	0.4	1.0	0.5	1.1	0.5	1.1	0.6	1.0	0.6	1.1	0.7	1.2	0.6	0.9	0.5	0.8	0.5	0.7
경북	1.4	4.1	1.6	4.2	1.8	4.2	2.1	4.2	2.1	3.9	2.1	3.6	2.7	4.3	2.7	4.1	2.4	3.5	2.8	3.6
경남	1.4	4.1	1.4	3.7	1.5	3.5	1.6	3.3	1.9	3.5	2.1	3.5	2.1	3.3	2.1	3.2	2.2	3.2	2.5	3.1
제주	0.1	0.2	0.1	0.3	0.1	0.3	0.1	0.3	0.1	0.2	0.1	0.2	0.2	0.3	0.1	0.2	0.2	0.2	0.2	0.2
합계	34.5	100	37.9	100	43.9	100	49.9	100	55.5	100	59.1	100	63.3	100	65.5	100	68.9	100	78.3	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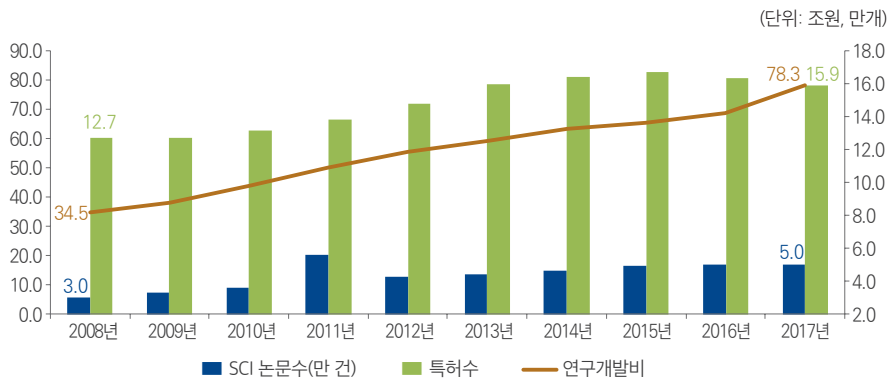
1) Romer(1990),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part III, S71-S102, 참조.

2) 방민석·정혜진,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011, 참조

지역 R&D투자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확대되면서 양적 성과는 증가한 데 비해, 질적 성과는 감소

- 지역연구개발비는 2008년 34.5조원에서 2017년 78.3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양적성과지표인 특허 수는 2008년 12.7만개에서 2017년 15.9만개로 증가하였고, SCI 논문 수는 2008년 3만개에서 2017년 5만개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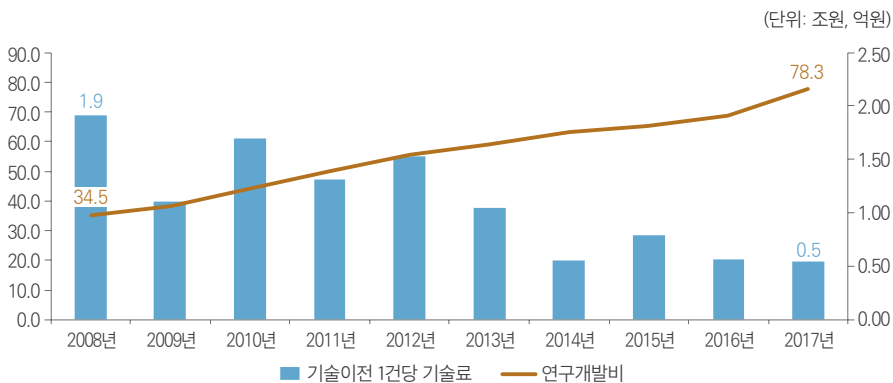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지역 연구개발비 및 양적 성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 그러나 연구개발비의 질적 성과지표인 기술이전 1건 당 기술료는 2008년 1.9억원에서 2017년 0.5억원으로 감소

[그림 2] 연도별 지역 연구개발비 및 질적 성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이와 같은 지역 R&D투자의 양적·질적 성과 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과를 포함한 효율성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질적 성과를 포함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환경 요인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효율성은 주어진 투입수준에서 산출이 가능한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frontier)을 표시하므로 효율성 제고는 주어진 투입에서 최대의 산출을 도출하거나 주어진 산출에서 투입 최소화를 의미

효율성 측정 방법

가. 자료포락분석기법

지역 R&D투자 효율성을 자료포락분석기법(Data Envelopment Analysis: 이하 DEA)으로 비교 분석(BOX : DEA 분석 기법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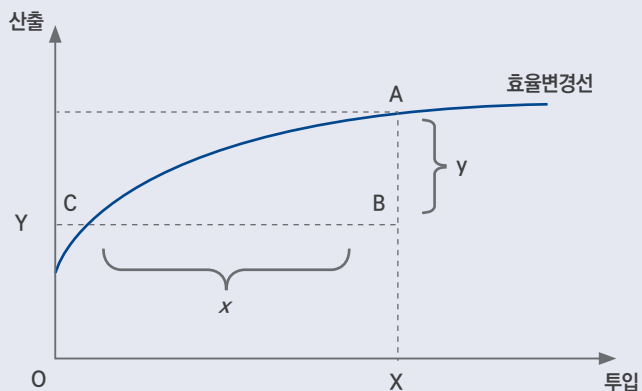
- (DEA분석) 분석대상 집단인 지역 R&D투자의 투입과 산출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효율변경선을 추정하고, 변경선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투입과 산출 관계를 통해 상대적 효율성을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기법

DEA 분석 기법

동일한 수준으로 연구개발비 지출을 투입하는 지역 중 A와 B, 그리고 C라는 지역이 있을 경우, A와 C 지역은 효율변경선에 놓여 있어 가장 효율적

- A지역의 산출이 B지역보다 높은 수준이라면 A지역의 연구개발비 지출이 더 효율적
— B지역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y만큼 산출을 올려 A지역 수준으로 산출이 향상되든지 아니면 x만큼 투입을 줄여 C지역만큼 투입수준이 낮아야 함

지역 연구개발비 지출의 효율변경선



자료: Mandl, Dierx, and Ilzkovitz,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spending*, European Economy, 2008, p. 8.

DEA 분석의 효율성에 관한 결과가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과 환경 요인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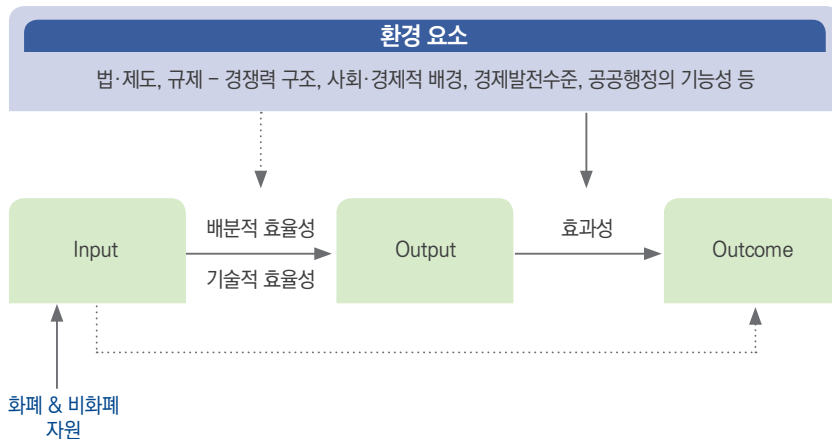
- 투입(Input)과 산출(Output), 결과물(Outcome)의 관계에서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이 나타나는데, 전자는 투입과 산출로부터 도출되는 데 비해 후자는 정책 목표(Objectives)인 결과물에 효과를 줌

- 이에 기술적 효율성³⁾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요소를 분석
- 지역별 R&D 분야에 투자되어 기술적 효율성으로 특허(출원) 수 등이 산출되면 이 효율성에는 환경 요소인 지역별 지역경제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지역경제 인프라는 GRDP, 지역별 재정자립도 등이며, 기술사업화 인프라는 연구개발수행조직 수, 기술이전/사업화 수,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 등임

- 아울러 기술적 효율성으로 생산된 산출물(Output)은 정책 목표(Outcome)에 효과를 미치는데, 이러한 때에도 환경 요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그림 3]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



자료: Mandl, Dierx, and Ilzkovitz,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public spending, European Economy, 2008, p. 8

따라서 지역별 R&D투자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R&D투자가 내생적 성장을 유도하여 GRDP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은 일정한 기술수준에서 주어진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해 가능한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는 정도를 뜻함

- (재원배분방향)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는 반면에,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성과(산출물)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 효율성이 높은 반면, 인프라가 덜 갖춰진 지역은 효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내생적 성과창출에도 한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시키는 방안 필요

나. 선행연구와 분석 자료

선행연구들은 산출요소로 양적 지표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질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를 찾기 어려움

[표 2] 지역 R&D투자 효율성 측정 국내 선행연구

	의사결정단위 분석대상	시차	투입요소	산출요소
배세영(2009) ⁴⁾	16개 시도별 R&D의 효율성	2년	R&D 투자액	연구원당 논문게재 수, 연구원당 특허출원 수
방민석·정혜진(2011) ⁵⁾	16개 시도별 국가연구개발 사업 효율성	2년	연구개발 투자비, 연구원 수, 연구장비 구입액	특허출원, SCI 보장지수
조성택(2016) ⁶⁾	16개 시도별 R&D 효율성 분석	2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국내성과인정 특허출원 수, 해외성과인정 특허출원 수, SCI 논문게재 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⁷⁾	한국과 중국 지역혁신체제 효율성 분석	2년	시도별 지역총생산(GRDP) 대비 연구개발투자액 비중, 시도별 인구 만 명당 연구개발인력	시도별 인구 만 명당 SCI 논문 수, 시도별 인구 만 명당 국내 특허출원 수, 시도별 인구 만 명당 국내 디자인수, 시도별 인구 만 명당 국내 실용신안 출원수

4) 배세영, "우리나라 시도별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분석: DEA와 SFA 측정 결과 비교분석", 「한국지역경제연구」, 2009, pp. 105-127, 참조

5) 방민석·정혜진,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지방 R&D사업의 효율성분석", 「지방행정연구」, 2011, pp. 285-308, 참조

6) 조성택, "정부 R&D 투자 효율화방안 연구 : DEA와 SFA를 이용한 R&D 효율성 분석", 「미래성장연구」, 2016, pp. 67-89, 참조

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2019, 참조

선행연구와 달리 본 지역 R&D투자 효율성 분석에서는 3개 투입 지표와 2개의 산출(양·질적) 지표를 활용하여 차별화

- (기존연구) 투입지표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인력, 연구장비구입액⁸⁾, 양적 산출지표로는 국내 특허(출원) 수와 SCI논문 수로 구성하여 연도별로 효율성을 측정⁹⁾
- (차별점)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를 질적 성과지표로 추가하여 활용함으로써 양적·질적 성과 지표로 효율성 측정¹⁰⁾

[표 3] 투입-산출 요소별 내용과 측정지표

	요소	측정지표	자료출처
투입요소	연구개발비	지역별 연구개발비 (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연구개발인력	연구개발인력 (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과학기술통계
	연구장비구입액	국가연구시설설비 지역별 투자현황 (억원)	각 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보고서(06~10),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과학기술통계
산출요소	특허(출원) 수	연도별 특허(출원) (건수)	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
	SCI 논문 수	연도별 SCI 논문 (건수)	연도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연도별 기술료징수액 (억원) 연도별 기술이전 (건수)	연도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

16개 지역 R&D 관련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이하 DMU)는 160개로 연구 개발사업의 효율성 측정에 사용된 투입과 산출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 각 년도 자료를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로 실질화하고,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nel data)로 작성

8) 연구비보다 연구장비구입비를 더 중시해야하는 이유로 동일한 예산이 투입될 때 연구비는 유량(flow)개념으로 해당연도에 지출되고 끝나지만, 연구장비에 대한 지출은 연구장비의 수명이 다하는 기간 동안 존재하므로 저장(stock) 즉, 자본의 대리변수로서 파악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투자의 효율성 측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 예는 설성수·김인호, “한국의 연구 장비 현황과 구축패턴”, 「기술혁신학회지」, 2006, p. 478, 참조

9) 방민석·정혜진, 2011, p. 287, 참조

10) 정부는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 R&D투자의 지속적 증가는 논문, 국내 특허(등록), 사업화 등 연구개발의 양적 성과의 증대로 이어졌으나, SCI 논문 1편당 피인용도와 기술이전 1건 당 기술료와 같은 질적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103쪽, 참조) 하였음. 하지만 SCI논문 1편당 피인용수는 지속적인 누적 수치로 기록된 질적 지표이기 때문에 연도 분석에는 가능할지 모르나, 10년간의 윈도우(Window) 분석에는 적절하지 않았음. 따라서 질적 지표로는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만을 활용하였음

[표 4] 투입 및 산출 변수의 기술통계량

(단위: 억원, 백만원, 명, 건수)

변수	대상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투입	연구개발비	29,294	52,018	420	312,523
	연구개발인력	29,955	42,133	681	193,926
	연구장비 구입액	535	628	27	5,816
산출	특허수(출원)	9,285	13,858	406	52,542
	SCI 논문 수	2,726	4,316	180	20,592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백만원)	134	215	3	1,671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권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과학기술통계 및 KISTEP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6개 지역 R&D투자 효율성은 MaxDEA 7 프로그램을 통해 측정

- 투입과 산출 간에 존재하는 3년간의 시차(time lag)를 고려하여 투입지표는 2005~2014년까지의 자료이고, 산출지표는 2008~2017년까지의 자료임
 - 연구개발시차는 투입 및 산출 지표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감안하여 3년으로 선택하였는데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입·산출지표 간에는 1% 이하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 존재
 - 질적 지표로 사용된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는 연구장비구입액과 1% 이하 유의수준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본스톡인 연구장비구입액과 질적인 연구 성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변수상호간 상관관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장비구입액	특허(출원)수	SCI 논문수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연구개발비	1.0000					
연구개발인력	0.9265***	1.0000				
연구장비구입액	0.4222***	0.3932***	1.0000			
특허(출원) 수	0.8763***	0.9834***	0.4036***	1.0000		
SCI 논문수	0.5096***	0.7586***	0.3175***	0.7932***	1.0000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0.0929	0.0316	0.6473***	0.0479	0.0300	1.0000

주: ***는 $p < 0.01$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지역 중 가장 효율적인 지역의 효율성 값이 1이 되고, 이를 준거 집단으로 삼아 여타 지역의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용어설명 BOX참조)

- 분석모형은 선행연구와 같이 무방향(non-oriented)¹¹⁾과 가변규모수익(variable return to scale), Window-DEA 모형(이동평균법을 사용)¹²⁾으로 효율성의 연도별 변동추이를 분석
 - 연도별로 효율성을 측정하면 당해 연도에 효율성 지표가 1이상으로 높은 지역이 많아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여유분기준모형(slack based model)으로 초효율성을 분석
 - 의사결정단위(DMU) 수(n)는 일반적으로 $3 \times (\text{투입변수 수} + \text{산출 변수 수})$ 보다 클 경우 적절한 것으로 판정하는데¹³⁾, 본 분석은 DMU가 16개로 $3 \times (3+2)=15$ 보다 크므로 자유도가 적정

용어 설명¹⁴⁾

DEA 모형들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

- DEA 모형은 분석문제의 성격과 주어진 자료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모형이 존재
 - 규모에 대한 수익 가정이 수익불변(constant to returns to scale)인지 수익가변(variable to returns)인지에 따라 구분
 - 효율성 측정 시 투입기준(input-oriented)인지 산출기준(output-oriented)인지의 여부인데, 이 때 무방향(non oriented)은 투입과 산출 기준이 아닌 경우를 말함
 - 효율개선방향이 방사형(radial)인지 비방사형(non radial)인지에 따른 구분
 - 물량자료만으로 분석하였는지 아니면 가격자료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는지의 여부

Window-DEA 분석은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시점에 따른 효율성의 변화를 기술적 효율성 자체의 변화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측정이 가능하게 함

- 이중 이동평균(moving average)방법은 여러 시점에서 측정된 패널자료가 일정한 주기 안에서는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가정을 하고, 주기 안에서는 체계적인 변동이나 오차가 없다고 가정
 - 적절한 단위기간을 선정하면 생산기술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효율경계를 좀 더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확히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분석의 유용성은 큼

여유분기준모형(slack based measure)은 수익불변과 수익가변모형이 잔여(slacks)를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을 계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

- 기존 모형의 경우, 효율성 점수가 1인 의사결정단위가 여러 개 존재하면 이 의사결정단위들 사이의 상대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초효율성(super efficiency)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모형이 여유분기준모형임
 - 동 모형은 투입이 줄어드는 양을 투입여유분, 산출이 늘어날 수 있는 양을 산출여유분이라고 할 때, 이들 투입여유분과 산출여유분들을 단위무관하게 만든 이후에 줄어든 투입량의 평균치와 늘어난 산출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효율성 척도로 계산하는 모형

11) R&D사업에는 무방향성이 적합하다는 선행연구는 엄익천·백철우·홍세호, "영역조절모형(RAM)을 활용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016, pp. 711~735, 참조

12) 분석기간이 10년(2008~2017년)이면 Window-DEA 설정 수식 $[(10+1)/2 \pm 1/2]$ 에 따라 윈도우 폭은 '5'임

13) 고길곤, 「효율성 분석 이론」, 2017, p. 264, 참조

14) 이정동·오동현(2012), 「효율성 분석이론」과 고길곤(2017), 「효율성 분석 이론」, 참조

효율성 분석 결과

가. 지역 R&D투자 효율성의 민감도 분석

전국 R&D투자 효율성($3(\text{투입}) \times 2(\text{산출})$)은 SCI논문 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3(\text{투입}) \times 3(\text{산출})$)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차이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3개 투입지표와 2개 양적 지표 및 1개 질적 지표로 분석한 전국 R&D투자 효율성은 2008년 0.55에서 2015년 0.56까지 상승한 후 2017년 0.47까지 하락하여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R&D투자 효율성(3×3)은 적정 의사결정단위수가 18개 $\{3 \times (3+3)\}$ 가 있어야 하므로 연구결과를 활용하기에는 자유도가 부족

[그림 4] 산출지표 변화에 따른 지역 R&D투자의 효율성 민감도분석



주: 3×2 = 투입 3개(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장비구입액), 산출 2개(특허출원 수 및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3×3 = 투입 3개(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장비구입액), 산출 3개(특허출원 수, 기술이전 1건당 기술료, SCI 논문 수)

지역 R&D 투자의 효율성 분석결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의 효율성(0.39)은 제2차 기간의 효율성(0.47)보다 낮아 분석기간 동안 준거집단(reference set)과의 효율성 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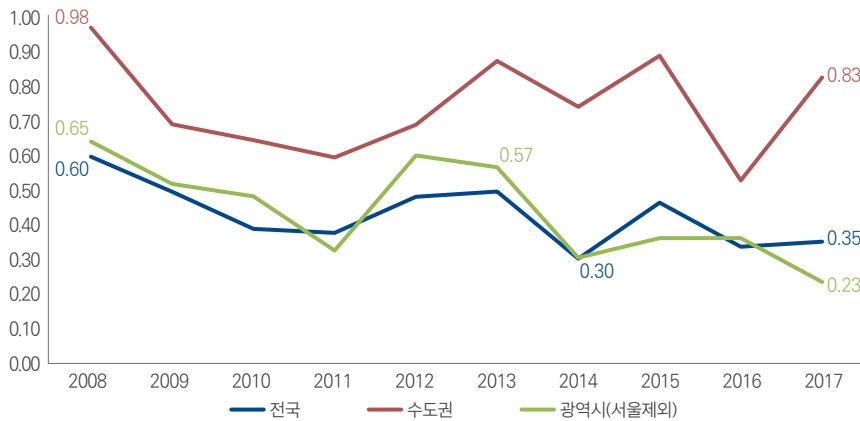
- 전국 R&D투자 효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구조적 전환이 발생한 2008년 0.60에서 2014년 0.30까지 하락한 이후, 2015년 0.47까지 반등한 뒤 2017년 0.35까지 하락

나. 지역 R&D투자의 효율성 비교 분석

수도권의 R&D투자 효율성은 2008년 0.98에서 2017년 0.83으로 하락하였으나, 전 기간에 걸쳐 전국 효율성보다는 높은 수준이었고, 6개 광역시의 R&D투자 효율성은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

- 6개 광역시 효율성은 2008년 0.65에서 2013년 0.57까지 전국수준보다 높았으나, 2014년 0.30부터 2017년 0.23까지 하락하여 전국수준에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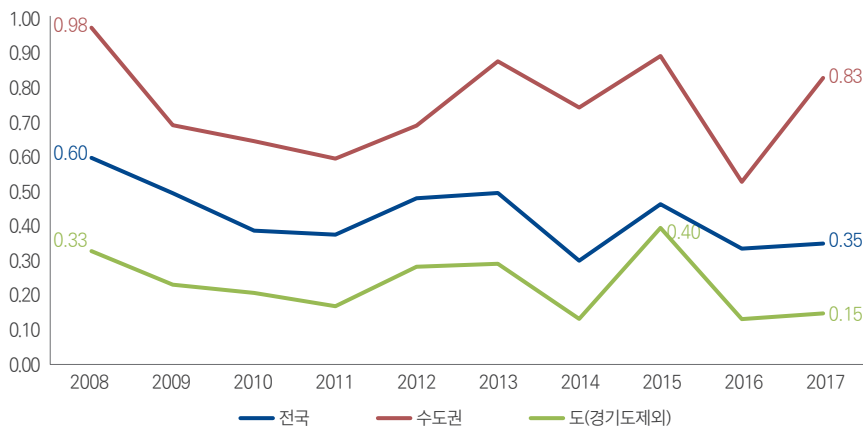
[그림 5] 권역별 R&D투자의 효율성 추이



주: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 경기도를, 광역시는 서울을 제외한 기타 광역시를 포함.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산출

도 지역(경기도 제외)의 효율성은 2008년 0.33에서 2017년 0.15까지 하락하여 전국 효율성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 도별 R&D투자의 효율성 추이



주: 도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를 포함

다. 효율성에 대한 환경 요인 분석 결과

기술사업화 인프라(지역별 창업 및 사업화 활동 항목지수)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은 인프라 진부화로 인한 성과창출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음¹⁵⁾

- 지역별 창업 및 사업화 활동 항목지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와 ‘신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수’를 표준화하여 동일한 가중치를 고려함으로써 합산하는 방법으로 지수를 산출
 - 이 중 ‘기술이전 및 사업화 수’는 ‘대학기술이전 대상 수’와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수’를 표준화시키고, 동일하게 가중치를 고려하여 점수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지수를 산출

[표 6] 기술사업화 인프라(지역별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

경기	서울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인천	강원
1.958	1.327	0.482	0.361	0.335	0.371	0.215	0.190
대전	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	울산	제주
0.311	0.185	0.278	0.388	0.297	0.239	0.023	0.067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2018, p. 167.

따라서 기술사업화 인프라와 지역 R&D투자 효율성 값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지역 R&D투자의 효율성 값과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과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

- 지역 R&D투자 효율성 값과 재정자립도와 실질GRDP는 1% 이하 유의수준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 지역 R&D투자 효율성 값은 연구개발수행조직 수와 기술이전/사업화 수,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와 1% 이하의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15)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8년)는 ‘지역별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를 통해 인프라의 진부화로 인한 내생적 성과창출에 한계를 지적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전략(안)-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안)-」, 2018, p. 5, 참조)

[표 7] 효율성과 환경요인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효율성 값	재정자립도	실질GRDP	연구개발 수행조직수	기술이전/ 사업화수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
효율성값	1.0000					
재정자립도	0.4337***	1.0000				
실질GRDP	0.3668***	0.6069***	1.0000			
연구개발수행조직 수	0.3718***	0.5547***	0.9188***	1.0000		
기술이전/사업화 수	0.4126***	0.6137***	0.9466***	0.8736***	1.0000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	0.3956***	0.5968***	0.9494***	0.9051***	0.9759***	1.0000

주: 1) ***은 1%수준에서 유의

2) 기술이전/사업화 수 수준(표준화) 및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는 KISTEP자료

자료: 통계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18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

지역 R&D 투자의 효율성 분석결과,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의 효율성(0.39)은 제2차 기간의 효율성(0.47)보다 낮아 분석기간 동안 준거집단과의 효율성차이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

- 전국 R&D투자 효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구조적 전환이 발생한 2008년 0.60에서 2014년 0.30까지 하락한 이후, 2015년 0.47까지 반등한 뒤 2017년 0.35까지 하락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전국 효율성 수준보다 낮은 6개 광역시와 도 지역(경기도 제외)은 지역경제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부족하여 투입을 줄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출물인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간구할 필요

- 수도권 R&D투자 효율성은 2008년 0.98에서 2017년 0.83으로 하락하였으나, 전 기간에 걸쳐 전국 효율성보다는 높은 수준이었고, 6개 광역시의 R&D투자 효율성은 2014년 이후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전국보다 낮은 수준
- 도 지역(경기도 제외)의 효율성은 2008년 0.33에서 2017년 0.15까지 하락하여 전국 효율성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경제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타 지역은 인프라 진부화로 인해 혁신성장 즉, 내생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

결론 및 시사점

- 먼저, 재정자립도와 실질GRDP 즉, 지역경제 인프라가 지역 R&D투자 효율성 값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지역별 효율성의 격차가 지역의 불균형적 발전을 가져오는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음을 시사¹⁶⁾
 - 재정자립도와 실질GRDP가 낮은 지역은 R&D투자 활동 역시 비효율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지역 성장에 있어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지역 R&D투자 효율성 값과 연구개발수행조직 수, 기술이전/사업화 수 및 창업/사업화 활동 항목지수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타 지역의 혁신성장 확산에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
 - 기술사업화의 인프라가 낮은 지역은 지역 R&D투자 활동 역시 비효율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는데 있어 내생적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이러한 결과는 지역 R&D투자 효율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성과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및 기술사업화 인프라의 편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다만, 동 분석에서 활용한 자료의 지역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과제수행 주관연구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세부과제 수행기관까지 내려가면 지역이 달라질 수 있는 한계점이 있음

16) 방민석·정혜진은 지역 R&D투자 효율성과 환경요인으로 GRDP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지역 R&D가 지역경제성장의 중요한 내생적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GRDP가 높은 지역일수록 효율적인 R&D투자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R&D분야의 효율적인 투자로 지역경제가 더 성장하는 구조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방민석·정혜진,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분석”, 『지방행정연구』, 2011, p. 300, 참조)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김미애 경제분석관(788-4676)

최근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자리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평가하기 위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이 높아짐

- 재정적·행정적 정책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보다 고용 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창출능력을 제고한다는 목적
- 본 제도의 취지와 고용정책의 중요도에 비하여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직간접 고용효과를 분석 및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부처에 통보
- 각 부처의 판단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고용노동부가 사후에 이를 모니터링

평가대상의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요청사업 위주로 선정되며,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결과의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각 부처와의 협력 및 지원시스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평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른 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음

대상사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을 확보하며, 국회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환류방안을 구체화하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정책적 제언을 어느정도 수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평가결과와 관련 자료의 공개 근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통한 환류 강화 등이 필요
- 국회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연구 배경

최근 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자리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짐

- 국내외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새로운 산업구조로의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 자체의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약화
- 정부의 정책과 국정운영에 있어 고용창출력 하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로 부상
 - 정부의 재정 및 산업 정책을 통해 직접 고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산업정책이 마련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고용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평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고용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2009년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제도가 도입¹⁾되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여 정책마련에 참고할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법규법적 근거가 명시됨
- 재정적 행정적 정책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을 보다 고용친화적으로 운영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고용창출능력을 제고하는 데 원 목적을 둠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후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²⁾, 여전히 일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 결과의 반영도가 낮은 문제점³⁾

- 특히 정부부처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하는 운용상의 문제점과 정책시행 방향을 수정하거나 차후 정책에 반영되는 등의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해 총체적인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사례 및 본 제도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실효성을 보다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

1)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참고자료 참조.

2) 예를 들어, 정책마련 단계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정부정책의 사후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사전평가방식으로 전환

3) 2013년 국회예산정책처 및 한국정책학회에서 「고용률을 고려한 사업평가체계 구축방안」(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나태준 교수 발표)을 주제로 국내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개선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제언 등의 환류시스템 개선과 함께 국회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부분도 함께 검토

고용영향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란?

목적 및 필요성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용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 정책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제기
-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법·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 증대

근거법령

-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23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2010년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1년 이후 본격적인 평가 시행
- 2013년 고용영향평가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을 고용영향평가 전담센터로 지정하고 평가인력 확충 및 『고용영향평가지침』 수립

평가대상

- 고용률 70%로드맵 추진과제 등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지출사업 : 인프라, R&D, 산업육성, 노동, 복지, 관광 분야 등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 제도, 규제개선 정책
- 민간단체(경제단체, 노조, NGO 등) 및 일반국민이 제안하는 과제

고용영향 평가제도 현황

가. 법리적 토대

현행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정책 고용영향평가와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로 구분

-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이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평가
 - 주로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거나, 주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대상 사업 선정 심의를 거쳐 정해짐
 -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는 2016년부터 예산편성 시 각 부처에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영향자세평가제도가 노동부에서 선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임
 - 국가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일자리사업⁴⁾과 100억원 이상 SOC·조달 사업, 인력양성 등 일자리 사업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⁵⁾ 전체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결과는 기재부 예산편성에 활용

[표 2] 평가 주체에 따른 고용영향 평가 구분

	정책 고용영향평가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주체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6개월 이상 연구실시, 3~12월)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3개월 이내, 4~6월)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SOC·조달 사업, 인력양성 등 일자리 사업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전체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해당 사업의 10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분석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기재부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중요지표로 활용
절차	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 실시(노동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부) → 예산편성지침 반영(기재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 (노동연→각 부처)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의의	정책이 일자리의 양·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언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창출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평가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기관 및 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

5)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일자리 사업 포함여부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 유형별 개념 등을 참고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판단하게 됨

	정책 고용영향평가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경과	2010년부터 시범실시	2016년부터 시범실시
평가과제	2011~18년 약 200여개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선정	2016년 185개, 2017년 249개 (100억 이상 사업 중 각 부처 선정) 2018년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이상 SOC, 일자리사업 유형 R&D 등 700여개
근거조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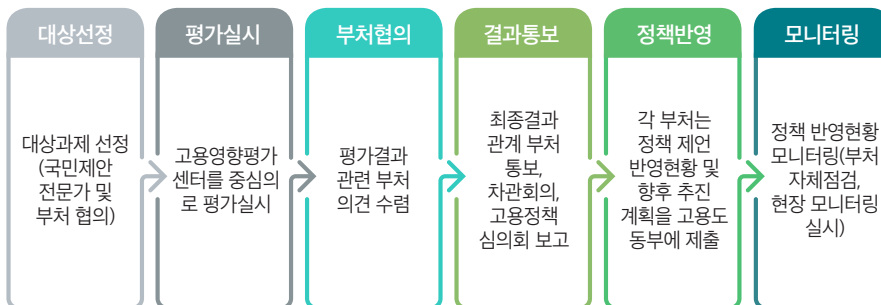
- 고용영향평가는 고용부장관 요청 하에 이루어지는 요청평가와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평가하는 선정평가로 나눌 수 있음(정책의 사전, 중간, 사후평가 모두 가능)
 - 평가대상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정책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정책

나. 평가 절차 및 제도 운영 현황⁶⁾

기본적인 평가 절차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고용효과를 분석 및 평가한 뒤 그 결과를 부처에 통보

- 평가의 결과는 각 부처의 판단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사후에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세부절차는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음

[그림 1] 정책 고용영향평가 절차 및 구성



자료: 고용노동부

6)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2016년 도입 당시 소관부처의 자체평가 형식으로 시행되었고 2017년부터(2018년 예산 편성안 작성 부처) 고용부가 사업을 선정하고 노동연구원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본 절차 및 현황은 정책 고용영향평가 기준임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2010년 7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9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 현재 27개 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

[표 3] 정책 고용영향평가 실시 현황

연도	주요 평가대상 사업 및 정책	현황
2010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대책, 4대강 사업	7개 사업 평가
2011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확대,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19개 사업 평가
2012	경부호남고속철사업,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지원 방안,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	19개 사업 평가
2013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원, 일가정양립지원정책,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 지원	15개 사업 평가
2014	해외진출 중소기업U턴 촉진, 방사선 기술 개발 사업, 시니어 창업지원,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30개 사업 평가
2015	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 최저임금 인상, 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 고용플러스센터의 일자리창출효과	32개 사업 평가
2016	관광숙박 산업 규제 완화, 공유경제 허용, 청년고용 할당제	19개 사업 평가
2017	유통업 파견근로 고용개선 효과, 원하청상생협력제도, 신산업투자 활성화, 고용친화적 조세제도	39개 사업 평가
2018	산업활성화 7개 과제 및 인력양성 관련 4개 과제 포함 (지자체 요청과제 1건 포함)	29개 사업 평가
2019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고용효과, 소상공인 역량강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제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사회서비스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요청과제 1건 포함)	28개 사업 평가 진행 중

자료: 고용노동부 및 고용영향평가센터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 작성

2017년 부터는 산업별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등 보다 고용시장 친화적인 정책적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전 평가가 시행됨

- 2016년까지의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정부 재정사업 시행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중심
 - 예산투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거나 사업 시행에 따른 노동시장에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한정
- 그러나 2017년부터 도입된 사전평가의 강점은, 산업별 노동시장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별 예측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여 제안한다는 것

[표 4] 정책 고용영향평가

평가내용	고용연계성: 일자리 창출 경로
	양적 측면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증감
	고용의 질 측정: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등 조사
평가방법	공인통계 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시나리오 분석
평가절차	연구진 분석 보고서 작성
	관계부처 및 산업계·노동계 의견수렴

자료: 고용영향평가센터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평가방법 및 접근법

고용에 미치는 양적·질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에 따라 평가

- 사업의 고유한 목적과 고용효과와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연계성을 분석, 해당 산업에서 연구대상 및 주제가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평가함
 - 예를 들어, 「보건의료인력법」제정에 따른 고용연계성을 평가할 때 기존법의 정원 준수를 강화할 경우 부족인력이 충원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는 점과, 기존 근로자의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추가고용이 발생하는 효과 검증
 - 청년층 고용확대효과, 지속성있는 일자리의 창출 효과, 인력수급 및 고용안정성의 문제 해결방안, 숙련노동자 양성 등의 부가적인 이슈를 발굴하여 정책적 제안을 도출

[표 5] 고용영향평가 방법 개요

고용영향평가 기준	평가 내용	
양적 효과 측정 가이드	직접효과	DID, PSM 등 다양한 분석방법 제시
	간접효과	I-O 분석, CGE 분석, 다변수 시계열 모델, 다변수 회귀모델, 거시방정식 체계 적용
질적 효과 측정 가이드	평가항목	고용 확대, 고용의 질적 제고, 원활한 인력수급체계 정립,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
	자료 수집 방법	사업주체와의 질의문답 유관기관 DB 유사사업 현황과의 비교 분석

자료: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거시 계량모형 및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국민경제적 고용효과를 평가함

-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규모 및 구조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당해 정책에 부합하는 인적자원 정책을 연계하거나 보완정책 수립에 활용

정책 수혜집단을 대상으로 고용효과를 조사하는 미시적 분석이 병행됨

- 과거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업이나 현장 관련자를 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향후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기업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라. 결과의 활용

고용부에서 정부 및 자치단체에 고용의 양·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부처는 제언 및 개선권고 받은 정책에 대해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반영토록 함

평가결과를 소관부처에 통보한 이후 고용부에서 각 부처의 정책개선 유도를 위해 각 부처의 정책제언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대국민 공개

- 매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음(현재는 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있으나, 향후 DB 구축하여 공개할 예정)

고용영향 평가 해외 사례

해외 주요국의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 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정책입안에서 집행,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대해 유기적인 환류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그 활용도가 높은 점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각 국의 사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가. 미국 ARRA⁷⁾의 고용영향평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기반을 재건하기 위한 경기부양법(ARRA)을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주요 재정지출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

7) 2009년 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정부조달 확대, 보조금 및 융자 등의 재정지출확대정책을 골자로 하는 「경제회복과 재투자에 관한 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을 제정

- 재정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ARRA에 의해 자금을 수급받은 기관의 고용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연방기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고용영향평가는 예산관리처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

- 예산관리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는 ARRA에 의한 예산집행실적을 분기별로 집계하고 당해 자금 수급기관이 직접 신규고용한 실적을 조사
-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CEA)는 수급기관이 제출한 보고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ARRA의 전체 재정지출에 대한 거시경제적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의회에 보고⁸⁾

행정부의 결과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고용영향평가의 결과가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되고 이를 예산심사에 반영

- 예산관리처(OMB)와 경제자문위원회(CEA)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예산처(CBO)와 연방회계감사원(GAO)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갖추어져 있음

나. EU 정책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IA)⁹⁾

EU에서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s)의 지출에 따른 고용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본격적인 고용영향평가가 시행되어왔음

- EU 위원회가 법 제·개정, 제도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할 때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시행 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비교·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운영됨
- EU의 IA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였고, 현재는 기후변화, 공정거래, 에너지, 환경, 보건, R&D, 조세, 교육, SOC 등 각 국가의 정부정책 전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

8)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전체 고용효과 추정방법

- 재정지출을 조세지출, 보조금, 정부구매(계약), 주(지방)정부 이전, 연금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실질GDP에 미치는 영향을 승수로 추정(과거 재정지출 데이터를 활용)
- 전체발생일 자리를 직접고용, 간접고용, 유발고용으로 나눠서 추정
 - ① Direct Job : 정부 직접창출
 - ② Indirect Job : 정부사업 사용 물품 제조업체에 의해 추가 발생 일자리
 - ③ Induced Job : 정부 지출로 발생한 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켜 유발되는 일자리(Induced Job은 전체 발생 일자리에서 Direct Job과 Indirect Job을 차감하여 추정)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IA Guideline(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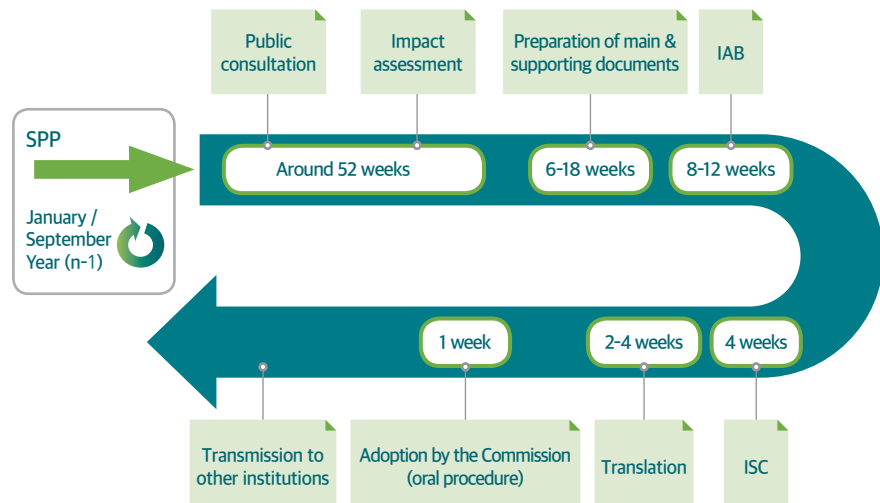
평가대상은 매년 초 EU 집행위원회의 연간 로드맵 정책 중 영향력이 큰 과제를 선정

- 재난 등 특수상황 시 Secretariat General/Impact Assessment Board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매년 결정

평가절차는 ① 정책 시행 1년 전 시작하는 사전평가부터 포함되는데, 평가계획을 수립하면 ② IA 조정그룹 구성 (EU 집행위원회 관련부서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무 포함)되어 ③ IA 실시(8~52주)

- IA위원회에서 검토 및 보고서 작성(8주)한 평가결과는 ISC(Inter-Service Consultation)에 제출하고 정책위원회 및 의회가 정책에 반영할지를 결정

[그림 2] EU 사전영향평가제도 절차 개요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일반적인 지표인 '직접고용효과와 간접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창출된 고용과 유지된 고용', '전일제 고용과 시간제 고용', '총고용효과와 순고용효과' 등 구체적인 사례와 다양한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양적인 고용효과 뿐만 아니라 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평가

- 일자리의 양: 새로운 일자리 창출 또는 감소로 귀결되는지 여부, 특정 직업군·자영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노동수요의 변화, 노동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미치는 영향, 이직발생 여부
- 일자리의 질: 근무여건, 재직자(또는 구직자) 직업훈련, 근로자의 건강·안전·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근로자 보호여부, EU 기본근로조건 충족여부, 현장의 기술혁신·공정 재설계 촉진 여부

-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직에 미치는 영향,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산업·지역 및 해당 분야에서 일자리의 변화 등도 포함

다. 호주 고용영향평가 사례

금융위기이후 침체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부(Department of Treasury and Finance)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확대하면서 고용효과를 평가

- 대규모 사회사업의 경우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평가하고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직접고용효과를 중심으로 평가
- 과거 시행한 사업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과거 사업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하고 있음
- 주요 주(state) 별로 자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책기획 단계에서 고용효과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1) NSW(New South Wales) 주정부 고용영향평가

NSW(New South Wales) 주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SOC 투자사업에 대한 고용창출효과 연구

- 민간경제연구소 URS에서 연구, 주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정책기획 단계에서 고용효과를 추정, 정책개선에 활용
- 경기부양정책의 일환으로서 향후 2~3년간 정부지출이 예상되는 재정사업 중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명시
 - 고용영향평가와 비용평가를 위한 기초자료가 완료되었거나 완성단계인 재정사업(예산자료 및 고용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용이해야 함)
 - 경기부양정책 중 신규사업이 벤치마킹할만한 일반적인 재정사업
 -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고, 평가의 실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

정책을 ① 정부가 최종 수요자인 경우¹⁰⁾, ② 산업 지원(미시적)¹¹⁾, ③ 공급 정책(거시적)¹²⁾ 등 3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각 정책타입별 평가방법을 구체화하여 제시

- 평가방법은 주로 I-O(Input-Output) 모형을 활용하여 고용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초기투자의 직접고용 + 연관산업의 간접고용 + 경제전체의 유발고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10) SOC, 정부구매 등

11) 세제혜택, 산업육성, 투자촉진, 컨설팅, 홍보, 보조금 등

12) 규제완화, 직업훈련, R&D 지원, 조세제도 등

(2) Queensland 주정부 사회영향평가

Queensland 주정부는 2013년 Social Impact Assessment(SIA) Guideline을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영향이 큰 정책에 대한 사회영향평가를 도입

- 평가대상은 공공개발법에서 명시한 재정 및 비재정 사업과 환경보호법에서 명시한 재정사업¹³⁾임을 명시하고 있음
- 지역문화, 소득수준 및 생활비, 인구 등 12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며, 이 중 하나로 “근로자 고용규모, 참여 및 다양성”이라는 항목으로 고용영향평가를 포함하고 있음
- 고용영향평가의 항목의 특성상 양적·질적 평가가 객관적인 지표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Queensland 주정부의 경우, 사회영향평가의 한 부분으로서 고용영향평가가 포함되어있는 대신, 정책추진에 반영되는 환류체계가 비교적 강제성을 띠고 있음

- 정책추진자가 기본적으로 SIA를 추진하고 시행하되, 이해관계자·정부 관련부서·지방정부·NGO를 모두 참여시켜야 함
- 정부는 SIA결과를 평가하고 정부 자금제공이 적절한지 판단하며, 환경영향평가(EIS)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평가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함

환경영향평가(EIS)는 자연환경·공공인프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지만, SIA는 별도로 시행되며 지역사회의 경제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전문적으로 평가한다는 특징을 가짐

- SIA시행 시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함
- SIA결과는 프로젝트의 전 시행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반영·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의회 및 정부의 연차보고서로 발간하여 공개함

현행제도의 문제점

가. 대상사업 선정의 명확한 기준 부재

평가대상의 선정에 있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정책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요청사업 위주로 소수의 사업만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는 문제점¹⁴⁾

- 현재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은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

나. 사전 고용영향평가 확대 필요

현재 시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와 기타 영향평가부분을 고려할 때 고용영향평가도 사전평가가 보다 실효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도 한계점으로 지적됨

- 사업 본래의 목적과 방향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고용 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
-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EU와 미국 등에서는 사전평가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와 활용도를 검토해 볼 필요
- 사전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선정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객관성을 높여야 함
 - 물론, 사전평가는 주무부처의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예산편성 및 국회심사 전 과정에 걸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과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다. 고용영향평가 환류시스템 미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권고수준일 뿐 강제성이 없어 평가결과의 활용성이 떨어짐

- 2016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정책반영 현황을 모니터링¹⁵⁾한 결과를 보면, 9개 부처 12개 과제에 대하여 40개의 정책권고안이 제안됨
 -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일부 다른 제도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신규 반영된 사항은 27개 안
 - 이 중 산업적 측면의 정책적 제안을 제외하고 고용관련 제안사항은 23개 중 7개 안이 미반영

14) 현재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를 기반으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중 평가대상을 선정함

15) 사업평가가 이루어지는 당해연도의 정책제안 사항은 시행중인 사업이나 차후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각 년도 모니터링 자료는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발표됨(2018년 고용영향평가 모니터링 자료는 2019년 말 발표)

소관부처가 평가결과를 반영할만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움

- 정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친고용적인 효과를 달성하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처가 이를 반영할만한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부처로부터 협조 받기도 어려우며 활용도가 낮아지는 한계점

라. 전문기관이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평가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

평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부와의 협력지원 및 연계시스템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른 평가방법을 발전시키는데 한계

- 지역별 계층별 고용효과, 일자리의 지속성 등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등 평가지표의 다양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기존의 고용영향평가자료를 분석한 결과¹⁶⁾ 또한 고용영향평가 보고서의 일부 방법론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점이 많은 방법론을 사용하거나,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 연구방법론에 대한 전문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마. 일부 제도와의 중복성 논란

고용영향평가제도가 예비타당성조사 및 재정사업(심층)평가 등과 일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정책적 분석의 일부분으로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으며, 사후적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사업(심층)평가와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음

그러나 정책 고용영향평가는 사업의 일차적(주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보다 고용친화적인 추진 방향을 사전에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일차적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이 있음

-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부분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를 분석하거나 재정사업(심층)평가에 의해 사후적으로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것과는 차별화됨
 - 다만,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유사한 방법(주로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고용영향을 평가함

[표 6] 예비타당성 조사와 고용영향평가 비교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심층평가	고용영향평가
평가 대상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서 국가의 재정지원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 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정책 고용영향평가)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 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 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의 사업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 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 간투자사업 등 정부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SOC·조달 사업, 인력양성 등 일 자리 사업 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전체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 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사업 선정 절차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 업평가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 업을 선정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재정사업의 운용 성과를 점검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평가 기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시점	사업 및 예산 기획단계	사업 중간 및 사후 평가	사업 사전 기획단계, 중간, 사후

자료: 공공투자관리센터 및 고용영향평가센터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 작성

시사점

대상사업의 범위 명시 및 확대 검토

- 고용영향평가는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하고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적 전략을 마련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영향평가 또한 평가 대상이 되는 정책의 예산 규모 및 정책의 중요도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¹⁷⁾

- 고용노동부는 2019년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산사업 고용영향평가의 경우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여 100억원 이상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됨
- 5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투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므로, 정책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직권상정에 의해 사전고용영향평가제도를 적용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대상사업 선정의 원칙과 다음의 예와 같이 구체적인 기준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
 -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지출이 있는 사업
 - 고용창출을 본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부수적이라 하더라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 또는 고용영향평가를 개별법으로 제정하여, 평가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환류방안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

다양한 평가방법 적용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실효성 확보 필요

- 고용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은 이미 형성되어 있으나 보다 전문성 있는 평가사업의 시행을 위해 전문가 풀을 확대할 필요
- 유럽위원회의 경우 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이 선정될 때마다 다양한 연구방법론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
- 연구자 중심의 고용영향평가는 현장중심의 정책개선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상 소관 부처나 자치단체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제언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17) 고용영향평가 자료를 메타평가한 보고서(2018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 보고서)에서도 ‘평가 대상 정책의 예산 규모 및 정책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서 고용영향 평가를 진행’할 것을 권고

국회 차원의 재검토 및 예산 반영 등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류방안을 구체화하는 법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2017년 고용영향평가 보고서를 메타평가 한 결과¹⁸⁾, 일부 고용영향평가의 방법론의 적용이나 평가내용에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고용영향평가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필요함
 - 고용부와 고용영향센터의 자체적인 평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므로 향후 평가의 질적 제고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차원의 메타평가의 필요성을 검토
- 정책적 제언을 어느정도 수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결과와 예산편성 연계, 평가결과와 관련자료의 공개 근거, 국회 차원의 재검토를 통한 환류 강화 등이 필요
 - 사전 및 사후 평가를 기재부 예결산심사와 연동하여 참여유인을 강화해야만 환류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 국회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국내 제도와 가장 유사한 미국의 경우, CBO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예결산심의회에 활용¹⁹⁾하는 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사업의 예산사업계획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성과계획서와 예산서류에의 활용을 높일 수 있음
 - 결산 시 모니터링 결과를 정성적 평가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상 가점을 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여러 가지 대안적 정책 중 보다 친고용적인 정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고용영향평가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평가를 통해 고용친화적인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보완되도록 하며 중간평가시 제기된 문제점을 수정하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단계에서 예산편성 시 참고하도록 하고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에 보고함으로써 환류성을 높여야 함
 - 평가대상 선정의 시기 또한 예산편성이나 국정감사에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평가가 완료되는 스케줄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18) 2018년 고용영향평가 메타평가 자료(고용부 및 노동연구원)

19) 행정부의 결과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한 고용영향평가의 결과가 의회에 분기별로 보고되고 이를 예산심사에 반영

[참고자료]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1. 2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정책 심의회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3. 고용노동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4.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평가의 결과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1.>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에 관하여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1.>

⑦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의 요청 절차, 대상의 선정 및 방법, 정책에 관한 제언 또는 개선 권고 및 개선 대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1.>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제2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4. 1. 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 재출연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2. 민간연구기관

[제목개정 2014. 1. 21.]

nabo Industrial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2019년 12월호 통권 제27호

발행일 2019년 12월 23일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경제분석국 산업고용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02·2672·1535)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논문 공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수행하는 재정전문기관입니다.

예산정책연구는 국회 내·외부 전문가들의 예산·결산·기금의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의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발굴·게재하며, 2018년 10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정책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모를 기대합니다.

논문 공모 마감일 및 학술지 발간일

공 모 마감일 상반기 3월 31일, 하반기 9월 30일
학술지 발간일 상반기 5월 31일, 하반기 11월 30일

※ 게재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 공모 마감일 이후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음

논문 제출 및 문의처

제출방법 e-mail 제출(journal@nabo.go.kr)
문 의 처 예산정책연구편집위원회
전 화 02-788-4619
홈페이지 www.nabo.go.kr/journal



건전한 재정
희망한 미래

nabo Industrial Trends & Issues
산업동향 &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97-001585-06